규제영향분석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목 차>

- 1.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
- 2.시설출입차량 등록대상
- 3.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이름	노규진
소관부처 및	담당부서 (과)	방역정책국	작 성	직급	주무관
작성자 인적사항	국장	박정훈	자	연락처	044-201-2520
	과장	이동식		이메일	nh5685@korea.kr

2021. 11. 24.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1.규제사무명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				
기본	2.규제조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정보	3.위임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12.01 ~ 2021.12.2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4건(경기·인천), '20.10월 월에 3건*(고성·인제·홍·현재까지 화천·연천 등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고병원성 AI는 지역 21.4)하였으며,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 있음 ○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 이번 「가축전임 하는 것임 이번 「가축전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농장 내로 유입되지 않음을 강화하는 것임 이상 사육업의 경우 (현행) 닭·오리 사육업의 경우 (현행) 닭·오리 사용추이 선물의 오염구역과 이 45cm·폭 15cm 이상의 모음을 설치 ○ 소독설비에는 동결 소독실비에는 동결 실시할 수 있도록	실 2건(화천), '21.5월 천) 발생(총 20건)하 17개 시군에서 야생 발생 빈도가 증가하 난 겨울철 가금농징 유럽·아시아 등 해외 나라에 도래하는 철사 가축전염병 방역역 을 위해 강화된 방역 이프리카돼지열병 배체·차량·사람에 의형 필요가 있음 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고병원성 AI 등 기 도록 하기 위해 소독 산란계 농가는 터널의 사란기 유명 모든 가금 육업 기준을 모든 가금 육업 사이에 소 청결구역 사이에 소 의 펜스·평상 구조물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록 함	는에서 109건 발생(*20.11 리에서의 발생이 급증하 내 등으로 국내 유입 가 량을 집중하여 ASF 및 역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 한 농장 유입 방지를 위 지 일부개정령안은 아프 나축전염병의 바이러스가 등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7.규제내용	 □ (제도화 필요성) 가축전염병은 한 농장에서 발생하면 다른 농장에서도 발생하고, 식품·외식 등 연관산업에도 피해를 주는 등 상당히 많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함 ○ 반면 농가 입장에서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에 비용이수반되기 때문에 제도화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기준을 강화하여 가축 사육시설의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것임 □ 피규제자 : 돼지 사육업자, 닭 사육업자, 오리 사육업자, 거위사육업자, 칠면조 사육업자, 메추리 사육업자, 타조 사육업자, 꿩 				
8 .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		사육업자, 기러기 사육업자, 종계업자 이해관계자: 1,902(지방자치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유 형		자, 종오리업자, 바 방역부서 공무 부 소속 방역부서 인원수 16,439호(돼지 / 닭 사육업자 사육업자 사육업자 사육업자 사육업자 사육업자 사육업자 사육업자	, 종오리업자, 부화장 운영자 방역부서 공무원, 소속 방역부서 공무원) 인원수 또는 규모 16,439호(돼지 사욱업자 6,972호 / 닭 사육업자 7,284호 / 오리 사육업자 1,104호 / 거위 사육업자 7호 / 칠면조	
		관련기관	농림 =	방자치단체 방역부사 소속 공무원, 동림축산식품부 및 축산검역본부 방역투 소속 공무원, 위생방역지원본부 소	68호 / 기러기 종계업자 513 127호 / ¹ 네 3,176명(특광역 676명 / 시 농림축산성 농림축산검	사육업자 12호 / 3호 / 종오리업자 부화장 206호) 격시 120명 / 시도 I군구 878명 / 식품부 40명 / 역본부 188명 /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목표) 가축 사육시설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강화하여 수준을 높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기대효과) 가축 사육시설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강화 방역 수준을 높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수 로 기대됨			위함 을 강화하여 차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피규제. 피규제자 정성분	이외	비용 2,224.79	편익	순비용 2,224.79

		ı				
			ㅇ (피규제자	농가) 가축전	염병 바이러스의 가축	
			사육시설의 유	·입을 차단하기	위해'소독설비 및 방	
			역시설의 기준	을 강화하여	차단방역을 철저히 수	
			행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의	l 발생 및 확산을 방지	
			하고 가축전염	병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음			
			ㅇ (축산물 유	·통업자) 가축?	전염병 예방을 통해 축	
			산물 수요·공급	급 불안전에 대	다른 축산물 가격의 급	
			격한 변화가	최소화된 안정	성적 사업을 영위할 수	
		주요내용	있으며, 가축진	선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	
		1 410	물 유통 기술			
			ㅇ (일반국민)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			
			해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축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을	통해 친환경축	산, 동물복지축산 등 소	
			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에 의			
			한 안정성 우	려 등을 최소	화하여 수요·공급 불안	
			정에 따른 축	산물 가격의 급	급격한 변동을 막아 안	
			전한 축산물을	·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이 발	
					물 소비가 활성화되는	
			부수적인 효괴			
	11.영향평가	기술영향평	가 경쟁	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여부	해당 없음	해	당 없음	해당 없음	
	12.일 몰설정	ㅇ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일몰설정 대상에 해당	
	여 부	되지 않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ㅇ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	
기타	적용여부	용 대상에 해당되	지 않음			
	<u> </u>					
	14.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비용	편 익	연간균등순비용	
	(단위:백만원)	적용	2,224.79	0	281.16	

<조문 대비표>

혀 햇

[별표 1의10]

<u>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u>(제20조제1항 관련)

- 1. 공통기준
 -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u>입구에</u>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소독하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u><신 설></u>

나. 가축사육시설 등 해당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장 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추 어 둘 것

<신 설>

<신 설>

- 2. 개별기준
 - 가.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 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 (1)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	<u> </u>	
소독	(가) ~ (마) (생	략)
시설		
방역	(가) ~ (다) (생	략)

개 정 안

[별표 1의10]

<u>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u>(제20조제1항 관련)

- 1. 공통기준
 -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u>각 입구에</u>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터널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소독시설 이외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추가 소독 실시 여부를 영상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차량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가목의 전단 기준에도 불구하고 50제곱미 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 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 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 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다. 가축사육시설 등 해당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장 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추 어 둘 것
 - 라. 제2호 개별기준은 각 목의 업종별로 구비 하여야 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u>마. 각 소독설비는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소독</u> <u>이 가능하도록 동결방지 장치등을 설치하여</u> 야 한다.
- 2. 개별기준
 - 가.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 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_ / .		' '	1 1 7 / 1	/ 1 1	
				(현행과		
<u>설비</u>				(현행과		
방역	(가)	~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시설	시설
(2) 돼지 사육업	(2) 돼지 사육업
소독 (가) ~ (마) (생 략)	소독 (가) ~ (마) (현행과 같음)
시설 (기) (기) (기 라)	설비 (기) (기) (최 제 기 기 이)
(가) ~ (나) (생 략)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	
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	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
방역 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방역 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시설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	시설
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	
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	
다 <u>.</u>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3) <u>가금(닭,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u>
	기러기, 타조) 사육업
(가) <u>차량 출입구에는</u> 차량 외부, 바퀴 및	(가) 각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를 <u>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u>	및 흙받이를 <u>세척·소독할 수 있는 고</u>
<u><u><u></u> <u><u><u></u> <u><u></u> <u> </u></u></u></u></u></u>	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의 경우
	에는 고압분무기 또는 분무용소독시설
(나) 닭·오리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u>을 설치할 수 있다.</u> (나) <u>가금</u> 사육시설의 <u>각 출입구</u> ,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집란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집란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
<u>시설</u> 치할 것 (다) 농장의 <u>출입구에</u> 출입자의 옷 등을 소	<u>설비</u> 치할 것 (다) 농장의 <u>각 출입구</u> 에 출입자의 옷 등을
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라) <u>출입기록부를</u> 갖추어 둘 것	(라) <u>각 출입구별 출입기록부를</u> 갖추어 둘
	것
(마) <u>방문차량</u>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마) 각 차량 출입구별 방문차량 소독실시
것 <신 설>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바) 별도의 식용란 상차장을 운영하는 경
	우 식용란 상차장에 고압분무기를 설치
	합 것.
(가) <u>농장의 출입구에</u> 차량진입 차단 바 또	(가) <u>농장의 각 출입구에</u> 차량진입 차단 바
방역 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방역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시설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

현 행

- 개 정 안
-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네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u>농장 입구</u>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 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 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 가를 받도록 할 것
-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라) (마) (생 략)
- (바)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前室)을 설치할 것. 다만, 닭·오리 사육시설이 한동만 있는 경우 등에는 (라)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1) 닭·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 구에 설치할 것. 다만, 두동 이상의 닭·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 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경우 등에는 울타리·담장 입구에 전실을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 2)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오리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 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u>농장의 각 출입구</u>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 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 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 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u>각 출입문을</u> 통해서만 방역 후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u>설치할 것.</u>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으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라) (마) (현행과 같음)
- (바)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前室)을 설치할 것. 다만, <u>가급</u> 사육시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등에는 (라)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1) 가금을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출

 입구에 설치할 것
 - 2)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축사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과 구 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 3) 출입 시 반드시 신발을 갈아 신도록 높이 45센티미터·폭 15센티미터 이상 의 펜스·평상 형태의 고정된 구조물 또

현 행	개 정 안
	는 폭 1미터 이상의 발판 등을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신 설>	설치할 것 4)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각각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설치할
<u><신 설></u>	5)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각
	각 설치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
	을 구비하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
	사육시설 내부용 신발(또는 덧신, 비닐
	신발)을 구비할 것. 다만, 전실 공간이
	좁아 신발장 설치가 어려운 경우 오염
	구역과 청결구역에 비치된 각각의 신
	발소독조에 사육시설 외부용과 내부용
	신발을 담궈 보관할 수 있으며, 사육시
	설 내부용 1회용 덧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발장과 세척용 솔을 구비
<u><신 설></u>	<u>하지 않을 수 있다.</u> 6)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독제를 구
<신 설>	<u>비할 것</u> 7) 전실 밖에서 외부 신발을 벗고, 전실 입
	구에서 내부 신발로 갈아신고 입장하여
	전실에서 사육시설 진입 시 사육시설 입
	구에서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으로
	다시 갈아신는 경우에는 3)호와 5)호의
(사) <u>닭·오리</u> 사육시설의 <u>환풍시설, 배수</u>	설비를 구비하지 않을 수 있다. (사) <u>가급</u> 사육시설의 <u>환풍시설, 배수구, 퇴</u>
<u>구</u>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	비장, 왕겨창고 등에 야생동물(쥐, 새
을 설치할 것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u>다만, 퇴비</u>
	장의 분뇨차량 출입구로서 방조망 설치
	가 어려운 경우 개폐식 차단장치 등을
(아) 농장의 각 <u>출입구와</u> 각 사육시설 내부	<u>설치할 수 있다.</u> (아) 농장의 각 <u>출입구, 방역실 출입구, 각</u>
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	사육시설의 출입구(부출입구를 포함한
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	다)와 내부, 전실 내부(최근 3년 내 고
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
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u><단서 신설></u>	에 한한다)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

현 행	개 정 안
	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출입자의 방역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
	로 텔레비전으로 인근 시설·장소의 영
	생기록까지 동시에 저장·보관하는 경우
	에는 인근 시설·장소에 폐쇄회로 텔레
	비전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자)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
	및 해당 벨트와 연결된 사육시설 및 집
	란실의 접합부 등에 야생동물 차단을
	위한 덮개 또는 차단망 등을 설치할 것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의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의
영업자 소독 (1) ~ (4) (생 략)	영업자 소독 (1) ~ (4) (현행과 같음)
	[조득 (1) · 5 (4) (현용과 실름)
<u>시설</u> 방역 (1) ~ (2) (생 략)	<u>열미</u> 방역 (1) ~ (2) (현행과 같음)
시설	시설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집유장의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 소독 (1) ~ (2) (생 략)	영업자
	소독 (1) ~ (2) (현행과 같음)
<u>시설</u> 방역 (1) ~ (2) (생 략)	<u>설비</u> 방역 (1) ~ (2) (현행과 같음)
지설 시설	시설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
포장업자	포장업자
소독 (1) ~ (5) (생 략)	소독 (1) ~ (5) (현행과 같음)
시설	설비 기 (0) (관계가 가이)
방역 (1) ~ (6) (생 략)	방역 (1) ~ (6) (현행과 같음)
시설 마.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시설
소독 (1) ~ (2) (생 략)	소독 (1) ~ (2) (현행과 같음)
시설	설비
방역 (생 략)	방역 (현행과 같음)
시설	시설
다. 자료된다합의 에 따른 자료제요합자 소독 (1) ~ (2) (생 략)	소독 (1) ~ (2) (현행과 같음)
<u>시설</u>	설비
방역 (1) ~ (2) (생 략)	방역 (1) ~ (2) (현행과 같음)
시설 기 [호시비 세 메르 기호기자 미 기호기자	시설 기 [출시법 에 퍼로 기초기자 미 기초자자
사.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	사.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

현 행	개 정 안
기관의 운영자 소독 (1) ~ (2) (생 략)	기관의 운영자 소독 (1) ~ (2) (현행과 같음)
<u>시설</u> 방역 (생 략)	<u>설비</u> 방역 (현행과 같음)
시설 아. 「축산법」에 따른 종축장의 운영자	시설 아. 「축산법」에 따른 종축장의 운영자
(1) 종돈업자	(1) 종돈업자
소독 (가) ~ (마) (생 략)	소독 (가) ~ (마) (현행과 같음)
시설	설비
방역 (가) ~ (나) (생 략)	방역 (가) ~ (나) (현향과 같음)
시설	시설
(2) 종계업자 또는 종오리업자 조독(가) ~ (라) (생 략)	(2) 종계업자 또는 종오리업자 소독 (가) ~ (라) (현행과 같음)
<u>시설</u> (가) (생 략)	<u>설비</u> (가) (현행과 같음)
(나)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	(나)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
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방역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방역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으
지설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	시설 로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할
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	수 있는 자연경계인 경우에는 해당 시
<u>을 수 있다.</u> (다) ~ (차) (생 략)	<u>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u> (다) ~ (차) (현행과 같음)
자. 정액 등 처리업자	자. 정액 등 처리업자
소독 (1) ~ (5) (생 략)	소독 (1) ~ (5) (현행과 같음)
시설	<u>설비</u>
방역 (1) ~ (2) (생 략)	방역 (1) ~ (2) (현행과 같음)
시설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시설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차.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의 운영자 조목 (1) ~ (6) (생 략)	차.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의 운영자 조독 (1) ~ (6) (현행과 같음)
시설	型 · () () () () () () ()) () ()
(1) (생 략)	(1) (현황과 같음)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u>설치할 것.</u>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으로
방역 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	방역 사람, 차량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시설 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시설 있는 자연경계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있다.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부화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	(8) 부화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
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	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

현 행	개 정 안
의 <u>임상증상 등에 관한</u> 영상기록을 30일	의 임상증상, 부화용 알 및 난좌 소독실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	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
레비전을 설치할 것	장·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카.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카.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	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
리업자	리업자
소독 (1) ~ (3) (생 략)	소독 (1) ~ (3) (현행과 같음)
시설	설비
방역 (1) ~ (2) (생 략)	방역 (1) ~ (2) (현행과 같음)
시설	시설
<신 설>	3.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
	는 가금의 소유자등
<신 설> 	소독 가. 분무용 소독장비를 갖출 것
 <신 설>	설비 <u>나.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u> 가. 사람, 동물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외벽이 야생동물 등의 충돌
	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거나, 외부와
	<u>의 접족을 차단(무창, 이중망 등)한 경우</u>
	에는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시설
	나. 야생조류와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육시설에 방조망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자체가 야생조류의 접촉을 차
	단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방조망
	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비고: (생 략)	비고: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발생양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양돈농장에서 '19.9~10월 14건(경기·인천), '20.10월 2건(화천), '21.5월 1건(영월) 이후 최근 8월에 3건*(고성·인제·홍천) 발생(총 20건)하였으며,
 - * 고성(1회차, 8.7.), 인제(2회차, 8.15), 홍천(3회차, 8.25) 추가 발생 확인
 - 야생멧돼지는 '19.10월부터 현재까지 화천·연천 등 접경지역 인근 17개 시군에서 1,638건(9.30 기준)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
 - * 멧돼지 ASF 발생(월별): ('21.6월) 20건 → (7월) 55 → (8월) 89 → (9월 현재) 51
 - * 멧돼지 ASF 발생(전년 대비): ('20.6~8월) 9개 시군, 96건 → ('21.6~8월) 17개, 164건(71%↑)
 - 고병원성 AI는 지난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109**건 발생('20.11~'21.4) 하였으며, 최근 유럽·아시아 등 해외에서의 발생이 급증
 - * 국내 발생 : ('16/'17) 421건 → ('17/'18) 22 → ('18/'19, '19/'20) 0 → ('20/'21) 109
 - * '16~'17/'20~'21 발생 비교: 야생조류 65건/**234**(260%↑), 가금농장 383/**109**(72%↓)
 - 유럽 야생조류의 AI 발생은 40배 증가(1~8월 1,237건, 전년 동기 31건)하고 발생 유형도 다양*(1종→6종)해졌으며, 중국 등 아시아도 3배 증가**
 - * '20년 유럽 H5N8형 1종 → '21년 H5N8(80%), H5N1, H5N3, H5N4, H5N5, H7N7 6종
 - * '21년 중국·베트남·대만 등 야생조류에서 H5N8, H5N6 등 4종의 AI가 44건 발생(전년 14건)
- □ (상황진단)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이 경기 북부→강원 북부
 →강원 중부로 확산되었고, 최근 울타리 밖인 가평·홍천·평창·
 정선에서도 검출되어 백두대간 등을 통해 양돈농장이 다수 분포한
 중부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높아짐
 - 6월 이후 멧돼지 양성 검출(164건, 경기·강원 13개 시군) 반경 10km 내 농장은 256호로 해당 시군 양돈농장의 72% 차지, 농장종사자의 외부 영농활동 등으로 인해 가을철 농장 발생 위험이 높아져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

- * 양돈농장 ASF 발생 20건 중 16건이 가을철에 발생
- 올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으로
 - * '20/'21년 국내 발생 AI는 유럽 바이러스가 철새 간 교차감염 후 유입된 것 으로 추정
 - * '16/'17년, 국내 2가지 유형(H5N8·H5N6)이 발생하여 장기간 가장 큰 규모 발생(140일 383건)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추진배경) 해외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올 겨울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철새 등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역량을 집중하여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 추진 필요
 -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역이 확산되고 백두대간 등을 통해 양돈농장이 다수 분포한 중부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등 가을철 농장 발생 위험이 높아져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매개체·차량·사람에 의한 **농장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 필요
- □ (내용)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것임
 - 10만수 이상 사육 산란계 농가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 돼지 사육업의 경우 울타리의 자연경계는 인정하지 않음

-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모든 가금 사육업으로 확대 적용
 - (현행) 닭·오리 사육업 → (개정) 가금(닭·오리·칠면조·거위·메추리·꿩·기러기·타조) 사육업
- 전실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신발 갈아신기를 위해 높이 45cm· 폭 15cm 이상의 펜스·평상 구조물 또는 폭 1m 이상의 발판을 설치
- 소독설비에는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동결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소규모 농가(50m² 이하)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을 마련
- □ (제도화 필요성) 가축전염병은 한 농장에서 발생하면 다른 농장에서도 발생을 하고, 식품·외식 등 연관산업에도 피해를 주는 등 상당히 많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함
 - 반면, 농장 입장에서는 방역시설 설치 등에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도화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o 규제대안의 내용

성해오되아	대안명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 유지
현행유지안	내용	○ 현행 기준 유지
	대안명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규제대안1	내용	 ○ 10만수 이상 사육 산란계 농가는 터널식 소독 시설 설치 의무화 ○ 돼지 사육업의 경우 울타리의 자연경계는 인정하지 않음 ○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모든 가금 사육업으로 확대 적용 - (현행) 닭·오리 사육업 → (개정) 가금(닭·오리· 칠면조·거위·메추리·꿩·기러기·타조) 사육업 ○ 전실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신발 갈아신기를 위해 높이 45cm·폭 15cm 이상의 펜스· 평상 구조물 또는 폭 1m 이상의 발판을 설치

		○소독설비에는 동결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기상여 건에 관계없이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소규모 농가(50㎡ 이하)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 설의 기준을 마련
	대안명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 완화
규제대안2	내용	○개인 사유제한의 관리는 민간의 영역으로 개별 농가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강화 여부를 판 단하도록 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현행 소독설비 및 방역시 설의 기준 유지 피규제대 상자의 비용부담 최소화	○가축 사육시설의 차단방역 수준이 낮아 차량, 출입인원, 매개체 등을 통한 가축전염 병 발생 우려
규제대안1	○ 피규제자에게 차단방역 수 준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을 마련, 개별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 산을 방지할 수 있음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강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은 국가가 사업을 통해 지 원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피규제자의 소독설비 및 방 역시설 강화에 따른 비용 부 담 발생
규제대안2	○개인 사유제한의 관리는 민간의 영역으로 개별 농 가가 소독설비 및 방역시 설의 강화 여부를 판단하 도록하여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 완화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을 민간 의 선택에 맡겨 농가별 차단 방역 수준이 달라 가축전염 병 발생 및 확산이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대한양계협회,	o AI 개선대책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등	의견 수렴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서머			
한국토종닭협회,	_	설명	ᄪᅫ	ᅰᅯ	۲-۱
한국육용종계부화협	0	반던	립덩	개정안	迢
히 및 하도형히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검출 지역이 경기 북부→강원 북부→강원 중부로 확산되었고, 최근 울타리 밖인 가평·홍천·평창·정선에서도 검출되는 등 백두대간 등을 통해 양돈농장이 다수 분포한 중부 지역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명

- 6월 이후 멧돼지 양성 검출(164건, 경기·강원 13개 시군) 반경 10km 내 농장은 256호로 해당 시군 양돈농장의 72% 차지, 특별관리 필요
- 농장종사자의 **외부 영농활동** 등으로 인해 **가을철 농장에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야생조류(철새)의 이동으로 오염 지역이 광범위하고, 겨울철새가 머무르는 내년 봄까지 위험이 지속 되고, 현재 가금농가에서 8건이 발새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 특히, 유럽 야생조류의 AI 발생은 40배 증가(1~8월 1,237건, 전년 동기 31 건)하고 발생 유형도 다양(1종→6종)해졌으며, 중국 등 아시아도 발생이 3배 증가한 상황
-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되는 주요 원인은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사람, 차량**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임
 - AI, 구제역도 유입원인의 각각 54.3%*, 78.9%**가 출입차량 또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5년, 건국대학교)
 - ** 2014-2016 구제역 백서(정책연구보고서,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9년 최초 발생한 ASF도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21건의 사육돼지 발생 건수 중 16건은 차량·사람·매개체, 5건은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간 전파로 추정하고 있음

- 특히,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2017.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6-'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역학조사 결과
 - 국내 가금 사육농장의 발생 원인은 대부분 외부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 미비와 농가의 방역지침 미준수 등에 의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사료·왕겨·분뇨수거·계란 수집 차량 및 야생조수 등에 의한 오염원 유입 등으로 추정되며,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가금농장에 울타리 또는 담장, 전실, 야생 동물 차단망 등에 대한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설치 재료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축사 시설 입구에 전실 대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는 등 축산농가의 전실 개념 혼동,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미숙 등 방역시설의 비 효율적 운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가축전염병은 한 농장에서 발생하면 다른 농장에서도 발생을 하고, 식품·외식 등 연관산업에도 피해를 주는 등 상당히 많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함
 - 반면 농장 입장에서는 방역시설 설치 등에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도화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또한, 국가 보조사업^{*}을 통해 가축 사육농가의 방역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여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농가의 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역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지원사업 추진 중

3. 규제목표

○ 가축 사육시설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여 차단 방역수준을 높이고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농가 유입을 차단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가축전염병은 바이러스가 **주로 매개체·차량·사람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발생함
 - AI, 구제역도 유입원인의 각각 54.3%*, 78.9%**가 출입차량 또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5년, 건국대학교)
 - ** 2014-2016 구제역 백서(정책연구보고서,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SF도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9건은 접경지역에 유입된 바이러스가 매개체·차량·사람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5건은 축산차량에 의해 농장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ASF 역학조사 중간결과(검역본부) 】

- **(9개소)** 1·2·3·6·7·9·10·11·14차 농장은 농장 출입자, 차량 및 야생조수류에 의해 바이러스 유입 추정
- (5개소) 4·5·8·19·13차는 축산차량을 통한 농장간 전파 추정
- 특히,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2017.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역학조사 결과
- 국내 가금 사육농장의 발생 원인은 대부분 외부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 미비와 농가의 방역지침 미준수 등에 의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사료·왕겨·분뇨수거·계란 수집 차량 및 야생 조수 등에 의한 오염원 유입 등으로 추정되며,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가금농장에 울타리 또는 담장, 전실, 야생 동물 차단망 등에 대한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설치 재료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축사 시설 입구에 전실 대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는 등 축산농가의 전실 개념 혼동,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미숙 등 방역시설의 비 효율적 운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가축 사육시설의 출입차량, 인원 및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한 소독

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여 차단방역을 철저히 수행하도록한 것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농가소득 제고 등 전체 가금산업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수단으로 판단됨

- 특히, 가축전염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농가단위 차단방역에 실패 하여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므로 비례적으로도 타당한 수단으로 판단됨
- 또한, 가축 사육농가의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보조사업^{*}을 통해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농가의 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축사시설현대화('21년 기준 1,912억원)사업으로 지원 중(보조율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 기존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국가표준(KS 등) 및 국제기준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가축 사육시설의 출입차량, 인원 및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을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축산 농가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가격과 생산 또는 품질과 상품, 서비스 다양성을 제한하지 않아 경쟁 영향 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①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 ② 사업의 요건으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절차를 설정함 ③ 일부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함 (예: 특정지역·특정유형 사업자 우대, 신규진입자 차별 등) ④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퇴출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예: 과도한 자본금·설비·자격요건·제품검사·인증 등) ⑤ 사업자의 상품, 용역, 자본 그리고 노동의 이동을 제한함 (예: 사업지역 제한 등)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 설정 능력을 제한함 (예: 가격상·하한 설정, 요금인가, 외부기관의 개입 등)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촉, 광고, 마케팅 활동을 제한 일부 사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선택할만한 수준 이상의 품질기준을 설정함 다른 사업자에 비해 일부 사업자의 생산비용을 상대적으로 (예: 특정사업자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나, 일반소비자가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① 산업계 혹은 전문직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를 형성함(협호 협회에 규제 권한 부여 등) ②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또는 매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 ③ 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사업자의 활동을 경쟁 관련법 적용(도록 요구함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①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제한함(예: 온라인 등 판매채널 기	제한 등)

② 소비자의 공급자 전환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킴

(예: 과도하게 긴 계약조건, 계좌 해지·통신사 이동시 수수료 부과 등)

③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활용하는 정보의 내용·제공방식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예: 일부 상품 정보만 제공 등)

- 중기영향평가

가축 사육시설의 출입차량, 인원 및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을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만 특정된 규제는 아니므로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1	규제	ଞ	
2	규제	방식	
3	예비분	분석모델	
		판단 근거	
4	대상	업종	
\$	예비분	문석내용	
6	차등화 여부	화적용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나 신산업 분야의 시장기능에 개입하는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축산업과 가축전염병이 존재하는 한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몰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미국의 축산농가 차단방역 사례>

- 상업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생산자는 ^①출입자, ^②차량(운전자)·장비, ^③축사, ^④사료·물, ^⑤쥐·해충, ^⑥배설물·폐사축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 조치^{*}를 해야함
 - * 생물학적 안전 조치 : 가축전염병이 인간, 동물, 장비, 차량 등을 통해 농장이나, 가금류 사육시설 등에 전염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함
- (주요 내용) 생물학적 안전 조치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가축 사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 차량, 동물·가축, 동물(가축포함)의 사체, 분뇨 및 야생 동물을 통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 미국의 방역시설 및 관리수칙
 - 출입구 폐쇄(간판 설치) : 평시 잠금상태 유지
 - 방역선 진입시 방역출입시설(전실)을 반드시 통과 : 샤워 및 환복
 - 완충지역 설정 및 준수 : 돈사 주변의 외부통제 경계역할 수행
 - * 완충지역 진입 전 차량과 장비 세척·소독(차량이 완충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충지역을 설정하며 설정방법은 울타리, 간판, 말뚝, 깃발, 로프 등 다양함)
 - ㅇ 울타리 설치
 - 주차장 : 농장 외부에 설치
 - ① 가금 사육시설에 대한 외부접근 차단
 - ② 가금 사육시설을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으로 구분하고 울타리로 분리
 - ③ 사육관리자만 축사내 출입(사육관리자는 조류가 있는 행사 참석 금지)
 - ④ 사육시설 방문자는 샤워 후 환복·신발 갈아신기(덧신, 신발소독 포함)
 - ⑤ 허가·등록된 사육대상 가금이 아닌 애완용 조류 등을 보유한 경우 가금 사육시설에 접근 및 접촉금지
 - ⑥ 야생 조류의 가금 접촉 금지 및 방사 사육 금지
 - ⑦ 사육시설의 청결유지
 - ⑧ 가금 사육시설 출입자 전용 의복 및 신발을 구비하고 출입시 환복·신발 갈아신기
 - ⑨ 가금 사육시설 출입 전 비누와 물로 손 세척
 - ① 사료·물을 매일 교체
 - ① 가금 사육에 사용되는 도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 ① 가금의 폐사체는 소각·매몰 처리
 - ③ 차량·장비 및 사육시설의 설비 등의 철저한 세척 소독
 - (4) 새로 입식한 가금의 30일간 격리사육
 - ⑤ 가금의 성장 단계별, 품종간 혼합사육 금지

- ® 가금 사육시설의 장비·도구 등을 타 사육시설 및 농장과 공유 금지
- ① 목제 깔판. 난좌 등 구멍이 많은 자재 등의 공유 금지
- ⑱ 사육 중인 가금의 임상관찰 철저 및 임상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일본의 축산농가 차단방역 사례>

- 일본은 BSE 발생('01)을 계기로 가축질병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사양 위생관리기준」을 제정·운용('04)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 및 보완 실시 ('11년부터 축종별로 기준을 분리)
- (주요 내용) 방역 시설·장비 설치(Hardware), 행동지침(Software) 등 가축사육업자가 사육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 규정

① 장비·시설

1) 위생관리구역 설정, 2) 출입구·사육장 부근 소독시설 설치, 3) 위생관리 구역 전용의복 및 신발 비치, 4) 야생동물 침입방지 그물망 등 설치 등

② 행동지침

1) 가축방역 최신정보 파악, 2) 위생관리구역 설정·병원체 유입 방지, 3) 가금 건강상태 관찰 및 이상 확인시 조치, 4) 매몰 등 준비, 5) 기록 확보 등

③ 사양위생관리기준

구분	세부항목
l 기축방역에 관한 최신정보 파악 등	1 가축방역에 관한 최신 정보 파악 등
II 위생관리구역의 설정	2 위생관리구역의 설정
	3 위생관리구역에 불필요한 사람 출입 제한
	4 위생관리구역 출입차량 소독
	5 위생관리구역 출입자 소독
│ │Ⅲ 위생관리 구역에	6 위생관리지역 전용의복·신발 비치
M	7 축산 관계시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이
영원제 ㅠ집 당시 	위생관리구역에 출입 할 때의 조치
	8 다른 축산 관계시설 등에서 사용한 물품
	등을 위생관리구역 반입시의 조치
	9 해외사용 의복 등을 위생관리구역 반입시 조치
	10 급이·급수시설 통한 야생 동물 배설물 혼입 방지
Ⅳ 야생동물으로 인한	11 음용수 소독
병원체 유입 방지	12 그물망 등 설치, 점검 및 수리
	13 쥐 및 해충의 구제
 V 위생관리구역의	14 정기적 청소 또는 소독
V 귀경진니ㅣㅋㅋ 위생 확보	15 빈 사육장 청소 및 소독
T 경 식도	16 과밀 사육 방지
	17 특정 증상 확인 조기 신고/출하/이동 정지
VI 가금의 건강상태 관찰 및	18 특정 증상 이외 확인시 출하/이동 정지
이상 확인시 조치	19 날마다 건강 관찰

	20 가금 반입시 건강 관찰 등
	21 가금류의 출하 또는 이동시의 건강 관찰
Ⅶ 매몰 등 준비	22 매몰 등 준비
Ⅷ 기록 확보	23 감염 경로 확인을 위한 기록 확보
IX 대규모 농장 추가 조치	24 수의사 배치
	25 신고 규칙의 작성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o 타법사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 시설의 설치를 명하고 있음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 6. (생 략)
- 7. 선박·항공기·열차 등 <u>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u>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u>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u>
-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u>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u> 것
- 10. ~ 11. (생략)
-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u>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u>원하는 것
- 13. ~ 14. (생 략)
- ② (생 략)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2.224.79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여	규제대안 1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직접	2,224.79		2,224.79	
· 소상공인	간접				
피규제 일반=	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2,224.79		2,224.79	
기업순비용		2,224.79	연간균등순비용	281.16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행 가축 사육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과 비교할 때 강화된 방역시설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 * 10만수 이상 사육 산란계 농가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 * 돼지 사육업의 경우 울타리의 자연경계는 인정하지 않음
 - *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모든 가금 사육업으로 확대 적용
 - · (현행) 닭·오리 사육업 → (개정) 가금(닭·오리·칠면조·거위·메추리·꿩·기러기·타조) 사육업
 - * 전실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신발 갈아신기를 위해 높이 45cm·폭 15cm 이상의 펜스·평상 구조물 또는 폭 1m 이상의 발판을 설치
 - * 소독설비에는 동결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소독을 실 시할 수 있도록 함

- * 소규모 농가(50㎡ 이하)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을 마련
- 최근 시설출입차량·사람 및 야생동물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해 가축전염병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에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강화를 통해
- 가축전염병을 예방하여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가소득이 높아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규제에 대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고
- 특히, 국가의 보조사업*을 통해 가축 사육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 * 축사시설현대화('21년 기준 1,912억원)사업으로 지원 중(보조율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방자치단체는 현재도 가축 사육농가의 방역시설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므로 가축 사육시설의 울타리 중 자연경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더라도 관리·감독 등 행정적 집행에는 문제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에 가축 사육농가의 방역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 축사시설현대화('21년 기준 1,912억원)사업으로 지원 중(보조율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1.5.27. 고병원성 AI 개선대책 마련

- '21.6.10. 고병원성 AI 개선대책 관련 가금단체 실무협의회 개최
- '21.6.14. 고병원성 AI 개선대책 관련 가금단체장 협의회 개최
- '21.6.18. 고병원성 AI 개선대책 관련 전문가 협의회 개최
- '21.9.3.~9.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 기관 협의

2. 향후 평가계획

-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서 규정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여부,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농장의 차단방역을 강 화하고 오염원의 전파를 차단할 계획
-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용 및 정착 유도
-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모두 갖추가 승인된 자체방역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가금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면제 등 방역 미흡농가와 차별화 추진
- 사전 점검결과 방역시설 미흡농장 집중 관리, 주요 방역시설*에 대한 미흡사항 미보완 시 사육제한 등 엄정 조치
 - * 농장의 출입구별 방역·소독시설, 축사 출입구의 전실 및 CCTV 관리 등
- 가금농장 지자체 전담관*을 통해 농장에 철새정보, AI 검출현황 등 방역상황을 전달하고 농장 방역수칙 안내

3. 종합결론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예측이 어렵고, 발생할 경우 대규모 살처분, 이동제한, 소독 등으로 막대한 방역비용이 소요되어 축산업계 전반에 큰 손실*을 야기함
 -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발생에 따른 생산성 악화로 낙농, 육우, 양돈 산업의 생산액 10% 감소시 생산유발액 감소 2조 3,849억원, 부가가치 감소 5.608억원.

고용유발 감소 29,487명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농촌경제연구원)

- (ASF) 타국의 발생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농가단위 차단방역에 실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장기간 근절되지 못하고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게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
 - * 스페인·포르투갈 : 완전 근절에 30년 이상 소요,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러시아 등 동유럽 10개 국가 : 2007년 ~현재 지속발생 중
- (고병원성 AI) 2016-2017년의 발생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농가단 위 차단방역에 실패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 급속히 확산되어 수백만 마리의 가금을 살처분하고
-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수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
 - * 가금산업 피해로 인해 연관산업의 생산액이 3,83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금산업과 연관산업을 합쳐서 6,711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부가가치 감소액은 1,584억 원, 고용 인력은 7,863명이 감소할 것으로 계측
- 이에 따라「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중 가축 사육농가의 출입 차량, 인원 및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것은
-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농가소득 제고 등 전체 가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 으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단위	
2021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직접	2,224.79		2,224.79
· 소상공인	간접			
피규제 일반	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2,224.79		2,224.79
기업순비용		2,224.79	연간균등순비용	281.16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이 (피규제자 농가)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가축 사육시설의 유입을 차단하기위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여 차단방역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막대한손실을 예방할 수 있음이 (축산물 유통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해 축산물수요·공급 불안전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최소화된 안정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물 유통 기술이 (일반국민)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축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을 통해 친환경축산, 동물복지축산 등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에 의한 안정성 우려 등을 최소화하여수요·공급 불안정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이 발전하게 되고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활동제목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 산 방지			
비용항목	설비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비용(원)X연간 구매 횟수X피규제자수X 자부담율([32010000*1*0]*0.4)			
	1) 피규제자 수 산정			
	○(터널식 소독시설) 산란계 10만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시설 213개 중			
	실제 운영 중인 192호에 대한 점검('21.8.24.) 결과 3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터널식 소독시설을 이미 설치·운영 중임 미설치된 3호는 고정			
	식 소독시설에 추가로 고압분무기를 운영 중으로 강화된 규제에 이			
	미 적합하므로 실제 피규제자 수는 0임			
2) 비용산정				
	○(터널식 소독기) [구매비용(32,010,000) X 구매횟수(1) X 피규제자수			
	(0)]*피규제자 부담률[0.4]			
	시 설 명 단가 단위 소요 총비용 견적비용 비 고 (천원)			
	총 소요액 32,010			
근거설명	터널식 소독기 32,010 대 1 32,010 전원/ 개(한국비엔 씨)			
	3) 피규제자 부담률은 국가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경우로 산정			
	○ 축사시설현대화('21년 기준 1,116억원)의 내역사업인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228억원)으로 지원(보조율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4) 축사시설현대화 및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 현황			
	○ 축사시설현대화('21년 기준 1,116억원)의 내역사업인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228억원)으로 지원(보조율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I.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에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임상증상 관찰로 조기 신고 유도와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 태 등을 평가 및 점검의 효율적 추진으로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함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 전염병의 발생 최소화을 위함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0년	비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10,500	12,000	22,8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 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및 돼지 사육농가

3. 지원사업별 대상 및 내역

구 분	지원 항목
	· <u>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u>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가금)	운송벨트의 <u>차단망</u> ,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u>방조망</u>
방역시설	(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u>물품반입창고</u>
및 장비	(시설), <u>방역실, 전실, CCTV</u> , <u>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u>
	(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돼지)	· <u>울타리</u> , 돼지 입출하대, 축산폐기물보관시설, 방충시설,
(세시 <i>)</i> 방역시설	퇴비사·돈사 방조망, 물품반입시설, 물품반입창고, 방
및 장비	역실, 전실, CCTV, 세척·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물 경미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 원 형 태 >

○ 국고 보조 30%, 지방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10%

※ 융자금리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정량)세분류	돼지 사육업자
활동제목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 산 방지

비용항목	설비			
비용	250,191,388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1미터당 울타리 설치비용*설치거리)*연간 구매 횟수*피규제 자 수]*자부담율([(25000*45)*1*581]*0.4)			
근거설명	지 수]*자부담율([(25000*45)*1*581]*0.4) 1) 피규제자 수 산정 ○(돼지 사육업자의 외부울타리) 전체 양돈농가 6,972호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 515호를 제외한 6,457호의 돼지 사육시설 행정조사결과' 울타리 개선이 필요한 농가 비율 9%를 적용 시 581호가 대상 * 395호 중 27호(휴·폐업) 제외, 368호(①유형 35, ②유형 300, ③유형 33) 2) 비용산정 지 설 명 단가 (천원) 단위 소요 총비용 건적비용 비고 *** *** *** *** *** *** *** *** ***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0년	비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10,500	12,000	22,8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 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및 돼지 사육농가

3. 지원사업별 대상 및 내역

구 분	지원 항목
	· <u>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u>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가금)	운송벨트의 <u>차단망</u> ,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u>방조망</u>
방역시설	(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u>물품반입창고</u>
및 장비	(시설), <u>방역실, 전실, CCTV</u> , <u>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u>
	(차량, 대인, 축사 내 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돼지)	· <u>울타리</u> , 돼지 입출하대, 축산폐기물보관시설, 방충시설,
(세시 <i>)</i> 방역시설	퇴비사·돈사 방조망, 물품반입시설, 물품반입창고, 방
및 장비	역실, 전실, CCTV, 세척·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및 장미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 원 형 태 >

- 국고 보조 30%, 지방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10%
- ※ 융자금리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정량)세분류	가금 사육농가
활동제목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 산 방지
비용항목	설비
비용	1,944,446,316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가금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비용*연간 구매 횟수* 피규제자 수]*자부담율([21802000*1*233]*0.4)
근거설명	1) 피규제자 수 산정 ○(가금) 전체 가금농가(8,621농가) 중 기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의무가 부여된 닭·오리 농가(8,388호)는 제외하고 칠면조(8호)·거위(7호)·메추리(102호)·꿩(68호)·기러기(12호)·타조(36호) 사육업자 233호가 대상 2) 비용산정

시 설 명	단가 (천원)	단위	소요	총비용 (천원)	견적비용	비고
총 소요액				21,802		
○ 외부울타리	25	m	45	1,125	50,600원/2m	인터넷 판매 가격(건자재 114)
○ 고압분무기	352	개	4	1,440	352천원/개	보 편 적 으 로 영 업 장 에 서 사용하는 고 압분무기
○ 신발소독조	7	개	4	28	7천원/개	인터넷 판매 가격
○ 방역실	6,200	개	1	6,200	6,200천원 (동진BLS 제공)	SEC AND SEC AN
○ 물품반입시설	-	개	-	-	-	방역실에 부속된 시설을 사용
○ 전실	3,000	개	4	12,000	3,000천원 (지유테크 제공)	CONTRA
∘ CCTV	979	set	1	979	979,000원	인터넷 판매가격
○ 방조방서방충망	1	조	1	30	30천원/20×7m	인터넷 판매가격

- 3) 피규제자 부담률은 국가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경우로 산정
 - 축사시설현대화('21년 기준 1,116억원)의 내역사업인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228억원)으로 지원(보조율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 4) 축사시설현대화 및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 현황
 - 축사시설현대화('21년 기준 1,116억원)의 내역사업인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228억원)으로 지원(보조율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I.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에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임상증상 관찰로 조기 신고 유도와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 태 등을 평가 및 점검의 효율적 추진으로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함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 전염병의 발생 최소화을 위함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0년	비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10,500	12,000	22,8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 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Al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및 돼지 사육농가

3. 지원사업별 대상 및 내역

구 분	지원 항목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 <u>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u>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u>차단망</u> ,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u>방조망</u> (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u>물품반입창고</u> (시설), <u>방역실</u> , <u>전실</u> , <u>CCTV</u> , <u>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u> (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u>울타리</u> , 돼지 입출하대, 축산폐기물보관시설, 방충시설, 퇴비사·돈사 방조망, 물품반입시설, 물품반입창고, 방 역실, 전실, CCTV, 세척·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 원 형 태 >

○ 국고 보조 30%, 지방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10%

※ 융자금리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정량)세분류	칠면조·거위·메추리·꿩·기러기·타조 사육업자				
활동제목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 산 방지				
비용항목	설비				
비용	19,264,306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동결방지 장치 구입비용*연간 구매 횟수*피규제자 수*자부담 율([216000*1*233]*0.4)				
	1) 피규제자 수 산정				
	○(동결방지 장치) 기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대상				
근거설명	자는 동절기 소독을 위해 동결방지 장치를 모두 운영하고 있어 제				
	외하고 신규로 설치하게 되는 칠면조(8호)·거위(7호)·메추리(102호)·꿩				
	(68호)·기러기(12호)·타조(36호) 사육업자 233호가 대상				

○(동결방지 장치)

시 설 명	단가 (천원)	단위	소요	총비용 (천원)	견적비용	비고
총 소요액						
동결방지장치	54	30m	4	216	54천 원/30m	인터넷 판매
020/10/1	54	30111	4	210	54位 전/SUII	가격

- 3) 피규제자 부담률은 국가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경우로 산정
 - 축사시설현대화('21년 기준 1,116억원)의 내역사업인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228억원)으로 지원(보조율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 4) 축사시설현대화 및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 현황
 - 축사시설현대화('21년 기준 1,116억원)의 내역사업인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228억원)으로 지원(보조율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I.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에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임상증상 관찰로 조기 신고 유도와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 태 등을 평가 및 점검의 효율적 추진으로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함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 전염병의 발생 최소화을 위함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0년	비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10,500	12,000	22,8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 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및 돼지 사육농가

3. 지원사업별 대상 및 내역

구 분	지원 항목
(가금)	・ <u>터널식 소독시설</u>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방역시설 및 장비	운송벨트의 <u>차단망</u> ,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u>방조망</u>
	(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u>물품반입창고</u>
로 경미	(시설), <u>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u>

	(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u>울타리</u> , 돼지 입출하대, 축산폐기물보관시설, 방충시설, 퇴비사·돈사 방조망, 물품반입시설, 물품반입창고, 방 역실, 전실, CCTV, 세척·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원형태>

○ 국고 보조 30%, 지방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10%

※ 융자금리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정량)세분류	소규모 농가						
 활동제목	소독설비 및 방역시	시설의 기	준 강	화로	가축전염병	병 예방 및 확	
20M7	산 방지						
비용항목	설비						
비용	10,902,201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소규모 농가의 소득 수*피규제자 수*자!	. —	_	—		연간 구매 횟	
	1) 피규제자 수 산정						
	○(소규모 농가) 사육	육시설이 5	() m² () (=	하로 등	록된 돼지 3	6호, 닭 562호,	
	오리 8호로 총 60	6호가 대성	-				
	 2) 비용산정						
		단가		총비용			
	시 설 명	단위 (천원)	소요	(천원)	견적비용	비고	
	총 소요액		1	47			
	○ 울타리 ○ 방조망	1 조	1	30	30천원/20×7m	인터넷 판매가격	
	○분무용 소독시설	10 개	1	10	10천 원/개	인터넷 판매가격	
	○신발소독조	7 개	1	7	7천원/개	인터넷 판매 가격	
 근거설명	3) 피규제자 부담률은	국가보조기	 	- 통해 지	원받을 경우	- - - 로 산정	
	│ ○ 축사시설현대화('21	년 기준 1.	116억원)의 내역	사업인 CCT\	/ 등 방역인프라	
		,					
	구축(228억원)으로 지원(보조율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4) 축사시설현대화 및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 현황						
	○ 축사시설현대화('2'						
	구축(228억원)으로	,					
		CCTV =	바여이	ᄄᆚᄸ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I.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에 CC	>T\/ 서윈 ㅋ	1010 1	트 미 어 사	J기리므의 히	.요퀜 이사즈사	
						용애 임상등상 등 평소 방역실	
					······································		

태 등을 평가 및 점검의 효율적 추진으로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함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 전염병의 발생 최소화을 위함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0년	비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10,500	12,000	22,80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 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및 돼지 사육농가

3. 지원사업별 대상 및 내역

구 분	지원 항목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 <u>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u>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u>차단망</u> ,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u>방조망</u> (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u>물품반입창고</u> (시설), <u>방역실</u> , 전실, <u>CCTV</u> , <u>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u>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 <u>울타리</u> , 돼지 입출하대, 축산폐기물보관시설, 방충시설, 퇴비사·돈사 방조망, 물품반입시설, 물품반입창고, 방 역실, 전실, CCTV, 세척·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원형태>

○ 국고 보조 30%, 지방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10%

※ 융자금리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간접편익

(정성)세분류	피규제 기업·소상공인(농가)
활동제목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 산 방지
편익항목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직접피해) 정부의 재정지출과 해당 가축의 수급 측면 변화에서 발생한 손실액 (간접피해) 연관 산업의 판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2010년 11월, 구제역) 살처분 보상, 방역비, 수매, 생계안정자금 등정부 재정지출액은 3조 391억 매몰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율은 낙농 8.46%, 한육우 3.92%, 양돈 33.57%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 (산업연관 분석 결과)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1,467억원, 부가가치유 발 감소액은 9,876억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425명 - (201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따른 피해액은 약 2,880억원 - 가금의 생산유발효과는 2.33으로 가금 생산액이 1원 감소하면 연관산업 생산액은 2.33원 감소함 -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55, 취업 유발계수는 10억원당 21.9명, 고용유발계수는 5.4명으로 부가가치 감소액은 1,584억원, 고용인력은 7,863명이 감소할 것으로 계측 - 가금산업 피해로 인해 연관산업의 생산액이 3,8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금산업과 연관산업을 합쳐서 6,711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근거] 이축산 방역체계 개선방안(정책연구보고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시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피해) 정부의 재정지출과 해당 가축의 수급 측면 변화에서 발생한 손실액 - (간접피해) 연관 산업의 판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 (2010년 11월, 구제역) 살처분 보상, 방역비, 수매, 생계안정자금 등 정부 재정지출액은 3조 391억 - 매몰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율은 낙농 8.46%, 한육우 3.92%, 양돈 33.57% - (산업연관 분석 결과)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1,467억원, 부가가치유 발감소액은 9,876억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425명 ○ (201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따른 피해액은 약 2,880억원 - 가금의 생산유발효과는 2.33으로 가금 생산액이 1원 감소하면 연관 산업 생산액은 2.33원 감소함 -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55, 취업 유발계수는 10억 원당 21.9명, 고용 유발계수는 5.4명으로 부가가치 감소액은 1,584억원, 고용 인력은 7,863명이 감소할 것으로 계측 - 가금산업 피해로 인해 연관산업의 생산액이 3,8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금산업과 연관산업을 합쳐서 6,711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근거] ○축산 방역체계 개선방안(정책연구보고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검산 방역체계 개선방안(정책연구보고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방역체계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7년, 한국농촌경제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편익

(정성)세분류	축산관계업자			
활동제목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편익항목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피해) 정부의 재정지출과 해당 가축의 수급 측면 변화에서 발생한 손실액 - (간접피해) 연관 산업의 판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 (2010년 11월, 구제역) 살처분 보상, 방역비, 수매, 생계안정자금 등정부 재정지출액은 3조 391억 - 매몰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율은 낙농 8.46%, 한육우 3.92%, 양돈 33.57% - (산업연관 분석 결과)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1,467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9,876억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425명 			

○ (201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따른 피해액은 약 2,880 억원

- 가금의 생산유발효과는 2.33으로 가금 생산액이 1원 감소하면 연관 산업 생산액은 2.33원 감소함

-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55, 취업 유발계수는 10억 원당 21.9명, 고용 유발계수는 5.4명으로 부가가치 감소액은 1,584억 원, 고용 인력은 7,863명이 감소할 것으로 계측

- 가금산업 피해로 인해 연관산업의 생산액이 3,83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금산업과 연관산업을 합쳐서 6,711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근거]
○축산 방역체계 개선방안(정책연구보고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소비자)			
활동제목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편익항목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 산 방지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피해) 정부의 재정지출과 해당 가축의 수급 측면 변화에서 발생한 손실액 - (간접피해) 연관 산업의 판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 (2010년 11월, 구제역) 살처분 보상, 방역비, 수매, 생계안정자금 등 정부 재정지출액은 3조 391억 - 매몰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율은 낙농 8.46%, 한육우 3.92%, 양돈 33.57% - (산업연관 분석 결과)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1,467억원, 부가가치유 발 감소액은 9,876억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425명[근거] ○ 축산 방역체계 개선방안(정책연구보고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l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규제 개요 >

	1.규제사무명	시설출입차량 등록대상				
기본	2.규제조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정보	3.위임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12.21 ~ 2022.01.1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4건(경기·인천), '20.10월월에 3건*(고성·인제·홍현재까지 화천·연천 등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고병원성 AI는 지역 21.4)하였으며,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 있음 이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 있음 이 특히, 고병원성 AI, 전염병 바이러스의 매기한 방역대책을 추진할 경 (21.10월까지 61,768대 등록 상사자라이에 포함('17.7,166대 등록 * 「AI·구제역 방역대상에서 제외 이 축산차량 GPS 관지방에 전함) 이번 「가축전에서 제외 이 축산차량 GPS 관지방에 25%/자부담 50억교체(권장)	절 2건(화천), '21.5월 천) 발생(총 20건)하 17개 시군에서 야생 발생 빈도가 증가하 난 겨울철 가금농징 유럽·아시아 등 해역 가축전염병 방역역을 위해 강화된 방역 을 위해 강화된 방역 등 위해 강화된 방역 등록 50㎡초과) 소유 차 10월 가전법 개정), 개선대책」('17.4월)를 생활 침해 등의 우려 리를 위해 통신비(민생)를 지원하고, 단말	*돈농장에서 '19.9~10월 1건(영월) 이후 최근 8 였으며, 야생멧돼지에서 멧돼지 ASF 총 1,638건 는 추세 '에서 109건 발생('20.11 리에서의 발생이 급증하내 등으로 국내 유입 가량을 집중하여 ASF 및 역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농장 유입 방지를 위하량등록제」 시행 이후 현재 라양등록제」 시행 이후 현재라 이후 현재라 이후 등은 화물차량에 한정하 '18.5월 시행 이후 현재라 이후 등의 등의 이후 현재라 이 따라 승용차는 적용 생물이 우이 이원, 국비 25%/날기는 3년 주기로 무료되기를 위해 모함하도록 하나 농장내로 통하는 별도		

	T	Г				
			주차시설에 주차하			
	□ (제도화 필요성) 축산농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					
		응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동경로 파악이 어렵고 가축전염병원균으로 오염된 지역을 운행한 차량이 농장을 상시 출입하여 축전염병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가축전염				
				J될 가능성이 높 -	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ㅇ 가축전염병은 한 농장에서 발생하면 다른 농장에서 발생				
		식품·외식 등 연관산업에도 피해를 주는 등 상당히 많은				
		부담을 초래함				
			임장에서는 차량			
			고 민간의 자발적 7		전염병 방역 정책	
			은 사실상 불가능함		도원 스윙지도원	
			·등이 소유하거나 '		,	
	7.규제내용		가축 사육시설의 차량을 등록하도록		귀하여 국산관계시	
	/.ㅠ세네ㅎ 		사랑들 등록하도록 의부 주차시설에		내근 토칭느 벼드	
		ĺ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려는 가축의 소유자등				
		왕물사동사들 시설물합사당으로 등록하더는 가죽의 오ㅠ사동 :				
	8. 피 규제 집 단		O ÷1	01.01.4	rr L	
	및		유형	인원구	또는 규모	
	이해관계자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자동차,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를 8	882명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려는 가축의			
			소유자등			
		□ (도입목표)	축산농가(50㎡초과 /	사육시설, 소유자	및 종사자) 소유	
		승용차 중 농장	을 상시적으로 출입	하는 차량(승용·승	능합)은 등록대상에	
	9.도입목표 및	포함하여 가축전	l염병 발생 및 확산·	을 차단하기 위함		
	3.	빛 │□ (기대효과)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꾀			지는 것을 막은이	
	기대승과	│□ (기대요파) /				
	기대효과		안전한 축산물을 인	정적으로 공급하		
	기대효과	로써 국민에게 인플루엔자의 팀	날생 및 확산 방지를	를 통한 지속가능	고 고병원성 조류	
	기대효과	로써 국민에게 인플루엔자의 팀	날생 및 확산 방지를 고 등 전체 축산업의	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고 고병원성 조류한 축산업의 발전	
	기대효과	로써 국민에게 인플루엔자의 팀	날생 및 확산 방지를	를 통한 지속가능	고 고병원성 조류	
규제의		로써 국민에게 인플루엔자의 팀	날생 및 확산 방지를 고 등 전체 축산업의	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고 고병원성 조류한 축산업의 발전	
규제의	기대효과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로써 국민에게 인플루엔자의 털	발생 및 확산 방지를 고 등 전체 축산업의 비용 438.05	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고 고병원성 조류 한 축산업의 발전 순비용	
규제의 적정성	10.비 용 편익분석	로써 국민에게 인플루엔자의 팀및 농가소득 제 피규제자	발생 및 확산 방지를 고 등 전체 축산업의 비용 438.05	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고 고병원성 조류 한 축산업의 발전 순비용	

		주요내용	□ (피규제자 농가) 가축 사육농가의 차량, 사람 및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기준'을 강화하여 차단방역을 철저히 수행하도록함으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음 □ (축산물 유통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해 축산물 수요·공급 불안전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최소화된 안정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물 유통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소비자의 축산물소비가 활성화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음 □ (일반국민)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축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을 통해 친환경축산, 동물복지축산 등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에 의한 안정성 우려 등을 최소화하여 수요·공급 불인정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인정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인정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인정성 무려 등을 최소화하여 수요·공급 불인정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인정성 무려 등을 최소화하여 수요·공급 불인정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인정성 무려 등을 최소화하여 수요·공급 불인정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인정성 무려 등을 최소화하여 수요·공급 불인정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인정성 무려 등을 최소화하여 수요·공급 불인정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인정성 무려 등을 최소화하여 수요·공급 불인정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인정성 무려 등을 최소화하여 수요·공급 불인정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인정한 기준 기준에 기준한 변동을 막아 인정한 기준에			독설비 및 방역시설의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인플루엔자로 인한 막염병 예방을 통해 축른 축산물 가격의 급적 사업을 영위할 수확산방지를 위해 축산타고 소비자의 축산물효과도 있음 방 및 확산방지를 위인 축산업에 대한 국민사, 동물복지축산 등 소으며, 가축전염병에 의사하여 수요·공급 불안
	 11. 영 향 평 가	기술영향평기			^{안성적으로 공} ! 향평가	급받을 수 있음 중기영향평가
	여부	해당없음	•		상없음	해당없음
	12.일 몰설 정 여부	국민의 생명, 건 지 않음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지 않음		된 규제로 일	몰설정 대상에 해당되
기타	13. 우선허용: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우선허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선허용·사후규제 적용		
	14.비용관리제	적용여부		왕	편 익	연간균등순비용
	(단위:백만원)	적용	2	138.05	0	55.36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의2]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시설 차량 유형 1.~18.	물업자당(세20소의3세1항)	시설: 차량 유형 1.~18.	물업자당(세20소의3세1앙)
19. 가축 사육시설 의 운영· 관리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 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 에 출입하는 차량 <단서 신 설>	19. 가축 사육시설 의 운영· 관리	등 또는 축산 관련 영업 종사자 등이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발생양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양돈농장에서 '19.9~10월 14건(경기·인천), '20.10월 2건(화천), '21.5월 1건(영월) 이후 최근 8월에 3 건*(고성·인제·홍천) 발생(총 20건)하였으며,
 - * 고성(1회차, 8.7.), 인제(2회차, 8.15), 홍천(3회차, 8.25) 추가 발생 확인
 - 야생멧돼지는 '19.10월부터 현재까지 화천·연천 등 접경지역 인근 17개 시군에서 1,638건(9.30 기준)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
 - * 멧돼지 ASF 발생(월별): ('21.6월) 20건 → (7월) 55 → (8월) 89 → (9월 현재) 51
 - * 멧돼지 ASF 발생(전년 대비): ('20.6~8월) 9개 시군, 96건 → ('21.6~8월) 17개, 164건(71%↑)
 - 고병원성 AI는 지난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109**건 발생('20.11~'21.4) 하였으며, 최근 유럽·아시아 등 해외에서의 발생이 급증
 - * 국내 발생 : ('16/'17) 421건 → ('17/'18) 22 → ('18/'19, '19/'20) 0 → ('20/'21) 109
 - * '16~'17/'20~'21 발생 비교: 야생조류 65건/**234**(260%↑), 가금농장 383/**109**(72%↓)
 - 유럽 야생조류의 AI 발생은 40배 증가(1~8월 1,237건, 전년 동기 31건)하고 발생 유형도 다양*(1종→6종)해졌으며, 중국 등 아시아도 3배 증가**
 - * '20년 유럽 H5N8형 1종 → '21년 H5N8(80%), H5N1, H5N3, H5N4, H5N5, H7N7 6종
 - * '21년 중국·베트남·대만 등 야생조류에서 H5N8, H5N6 등 4종의 AI가 44건 발생(전년 14건)
- □ (상황진단)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이 경기 북부→강원 북부
 →강원 중부로 확산되었고, 최근 울타리 밖인 가평·홍천·평창·
 정선에서도 검출되어 백두대간 등을 통해 양돈농장이 다수 분포한
 중부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높아짐
 - 6월 이후 멧돼지 양성 검출(164건, 경기·강원 13개 시군) 반경 10km 내 농장은 256호로 해당 시군 양돈농장의 72% 차지, 농장종사자의 외부 영농활동 등으로 인해 가을철 농장 발생 위험이 높아져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

- * 양돈농장 ASF 발생 20건 중 16건이 가을철에 발생
- 올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고병원성 AI 유입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으로
 - * '20/'21년 국내 발생 AI는 유럽 바이러스가 철새 간 교차감염 후 유입된 것 으로 추정
 - * '16/'17년, 국내 2가지 유형(H5N8·H5N6)이 발생하여 장기간 가장 큰 규모 발생(140일 383건)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추진배경) 해외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올 겨울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철새 등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역량을 집중하여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 추진 필요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역이 확산되고 백두대간 등을 통해 양돈농장이 다수 분포한 중부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등 가을철 농장 발생 위험이 높아져 특별관리가 필 요한 상황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매개체·차량·사람에 의한 농장 유 입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 필요
- □ (내용)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축산 농가(50㎡초과 사육시설, 소유자 및 종사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중 농장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승용·승합)은 시설출입 차량 등록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 다만, 농장외부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 □ (제도화 필요성) 축산농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승용·승합차)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동경로 파악이 어렵고 가축전염병 병원균으로 오염된 지역을 운행한 차량이 농장을 상시적으로 출입하여 가축전염병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
 - 가축전염병은 한 농장에서 발생하면 다른 농장에서도 발생하고, 식품·외식 등 연관산업에도 피해를 주는 등 상당히 많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함
 - 반면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차량등록 시 통신비 등 비용이 수반 되기 때문에 제도화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가축 전염병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1	
	대안명	시설출입차량 등록대상 유지
현행유지안	내용	○가축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화물자동 차로서 가축 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만 등록
	대안명	시설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규제대안1	내용	 ○가축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로서 가축 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 - 다만, 농장외부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
규제대안2	대안명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

		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출입 금지
ı	내용	○가축 사육시설내 차량 출입 금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피규제대상자의 행정적·경제 적 비용 부담 최소화	가축 사육시설 내로 가축 소유 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차 량을 통해 가축 사육시설 내로 가축전염병 병원균을 반입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규제대안1	피규제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등록 의무를 부여하여 가축 사육시설 내로 가축전염병 병원균 반입을 차단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확산 방지	피규제자의 차량등록 의무 부여에 따른 행정적·경제적 비용 부담 발생
규제대안2	피규제자의 가축 사육시설내로 차량 출입을 금지하여 가축전염병 병원균 반입을 차단하고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확산 방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축산농가 (축산농가 100호* 대상 설문조사) *소 38, 돼지 32, 가금 30	<축산농가 의향조사('19.12.17.)> ○현재 가축 소유자등의 승용차 출입방식은 ①농장 외부 주차시설에 주차(59%) ②농장 내부로 직접 진입(37%) ③별도 출입구를 가진 내부 주차시설 이용 (4%)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축 소유자등은 개인 승용차가 등록대상에 포함될 경우 - 농장 내·외부 별도 주차시설을 이용(87%) 하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겠다는 경우는 소수 (13%) 	의견 수렴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야생조류(철새)의 이동으로 오염 지역이 광범위하고, 국내에 철새가 도래하는 동절기부터 철새가 떠나가는 내년 봄까지 발생 위험이 지속되어 가금농장으로 확 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 현재,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6건이 산 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유럽 야생조류의 AI 발생은 40배 증가(1~8월 1,237건, 전년 동기 31 건)하고 발생 유형도 다양(1종→6종)해졌으며, 중국 등 아시아도 발생이 3배 증가한 상황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검출 지역이 경기 북부→강원 북부→강원 중부로 확산되었고, 최근 울타리 밖인 가평·홍천·평창·정선에서도 검출되는 등 백두대간 등을 통해 양돈농장이 다수 분포한 중부 지역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 6월 이후 멧돼지 양성 검출(164건, 경기·강원 13개 시군) 반경 10km 내 농장은 256호로 해당 시군 양돈농장의 72% 차지하고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
 - 특히, 농장종사자의 외부 영농활동 등으로 인해 가을철 농장에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 되는 주요 원인은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사람, 차량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임
 - AI, 구제역도 유입원인의 각각 54.3%*, 78.9%**가 출입차량 또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 Al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5년, 건국대학교)
 - ** 2014-2016 구제역 백서(정책연구보고서,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년 최초 발생한 ASF도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14건의 사육돼지 발생 중 9건은 차량·사람·매개체, 5건은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간 전파로 추정하고 있음
- 특히,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2017.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역학조사 결과

- 국내 가금 사육농장의 AI 발생 원인은 대부분 외부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 미비와 농가의 방역지침 미준수 등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사료·왕겨·분뇨수거·계란 수집 차량 및 야생 조수 등에 의한 오염원 유입 등으로 추정되며,
- 일부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등록 및 GPS 장착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에 차량 등록 및 GPS 장착을 해야 하지만 일부 차량 소유주가 준수 하지 않아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됨('17.1. 305대).
- 가축전염병은 한 농장에서 발생하면 다른 농장에서도 발생을 하고, 식품·외식 등 연관산업에도 피해를 주는 등 상당히 많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함
- 축산농가(50㎡초과 사육시설, 소유자 및 종사자) 소유 승용차 중 농장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승용·승합·이륜차)은 등록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오염원이 축산농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위함
- 반면 농장 입장에서는 차량등록 및 GPS 장착에 따른 행정적·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도화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함
- 또한, 국가 보조사업*을 통해 가축 사육농가의 GPS 장착에 소요 되는 비용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여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농가의 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사업 추진 중[(GPS 단말기 설치(국비 50%, 지방비50%), 통신비 매월 9,900원/1대(국비25% : 지방비 25% : 자부담 50%)]

3. 규제목표

○ 축산농가(50㎡초과 사육시설, 소유자 및 종사자) 소유 승용차 중 농장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승용·승합)은 등록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가축전염병은 바이러스가 주로 매개체·차량·사람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발생함
 - AI, 구제역도 유입원인의 각각 54.3%*, 78.9%**가 출입차량 또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5년, 건국대학교)
 - ** 2014-2016 구제역 백서(정책연구보고서,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SF도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9건은 접경지역에 유입된 바이러스가 매개체·차량·사람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5건은 축산차량에 의해 농장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ASF 역학조사 중간결과(검역본부) 】 ─

- **(9개소)** 1·2·3·6·7·9·10·11·14차 농장은 농장 출입자, 차량 및 야생조수류에 의해 바이러스 유입 추정
- ■(5개소) 4·5·8·19·13차는 축산차량을 통한 농장간 전파 추정
- 특히,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2017.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역학조사 결과
 - 국내 가금 사육농장의 발생 원인은 대부분 외부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 미비와 농가의 방역지침 미준수 등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사료·왕겨·분뇨수거·계란 수집 차량 및 야생 조수 등에 의한 오염원 유입 등으로 추정되며,
 - 일부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등록 및 GPS 장착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
 -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에

차량 등록 및 GPS 장착을 해야 하지만 일부 차량 소유주가 준수하지 않아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17.1. 305대) 것으로 조사됨

- 축산농가(50㎡초과 사육시설, 소유자 및 종사자) 소유 또는 임대 승용차 중 농장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승용·승합)은 등록대상에 포 함하도록 한 것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지속가 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농가소득 제고 등 전체 축산업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단으로
 - 특히, 농장외부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 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실제 등록하는 피규제자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농가 단위 차단방역에 실패하여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계는 물론 국가적 으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므로 비례적으로도 타당한 수단으로 판단됨
- 또한, 축산농가(50㎡초과 사육시설, 소유자 및 종사자) 소유 승용차 중 농장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승용·승합·이륜차)의 GPS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보조사업*을 통해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농가의 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사업 추진 중[(GPS 단말기 설치(국비 50%, 지방비50%), 통신비 매월 9,900원/1대(국비25%: 지방비 25%: 자부담 50%)]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①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 ② 사업의 요건으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절차를 설정함 ③ 일부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함 (예: 특정지역·특정유형 사업자 우대, 신규진입자 차별 등) ④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퇴출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예: 과도한 자본금·설비·자격요건·제품검사·인증 등) ⑤ 사업자의 상품, 용역, 자본 그리고 노동의 이동을 제한함 (예: 사업지역 제한 등)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 설정 능력을 제한함 (예: 가격상·하한 설정, 요금인가, 외부기관의 개입 등)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촉, 광고, 마케팅 활동을 제한 일부 사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선택할만한 수준 이상의 품질기준을 설정함 다른 사업자에 비해 일부 사업자의 생산비용을 상대적으로 (예: 특정사업자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나, 일반소비자가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산업계 혹은 전문직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를 형성함(협회 협회에 규제 권한 부여 등)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또는 매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 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사업자의 활동을 경쟁 관련법 적용(도록 요구함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①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제한함(예: 온라인 등 판매채널 7 ② 소비자의 공급자 전환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이동성을 경	. — –	

(예: 과도하게 긴 계약조건, 계좌 해지·통신사 이동시 수수료 부과 등)

③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활용하는 정보의 내용·제공방식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예: 일부 상품 정보만 제공 등)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1	규제	영역	
2	규제	방식	
3	예비는	분석모델	
		판단 근거	
4	대상	업종	
(5)	예비분	분석내용	
6	차등호 여부	화적 용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일몰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미국과 덴마크는 차량운전자에 대한 인증 및 등록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미국의 가축 운반차량에 대한 규정>

- □ 미국은 돼지고기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돼지 수송 트럭 운전자에 대한 인증(Trucker Quality Assurance)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트럭 운전자들은 미국양돈생산자협회의 TQA(National Pork Board's Trucker Quality Assurance program)에서 부여하는 수료증을 받아야만 함 □ TQA 프로그램은 생산자가 자신의 돼지들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운송하거나 또는 운송업자를 고용하던지 간에 모든 트럭운전자들에게 수송에 대한 주의사항과 Trucker Quality Assurance program 코스를 듣고 시험에 합격한 후 Certified Quality Truckers가 되도록 함
- □ 트럭운전자들이 수료증을 받고 TQA 프로그램의 권고사항들을 양돈농 가들의 책임 하에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 돼지의 수송 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여러 권장사항으로

- ① 트레일러는 잘 손질된 상태로 유지
- ② 트럭과 트레일러는 돼지가 미끄러져 부상당하지 않도록 사용 후 청소
- ③ 마리당 적절한 면적을 확보하여, 체온 상승 등으로 인한 폐사, PSE 도체(Pale Soft Exudate Pork) 등을 피하도록 권고함
- ④ 양돈농가들은 운송업자를 고용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돼지를 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송 시 출하 돼지를 적절하게 취급 할 책임이 있음 <덴마크의 가축 운반차량에 대한 규정>
 - □ 돼지 등 가축의 운송에 관한 규정(EU Regulation (91/628/EEC) and Regulation No 201, 19933월)

□ 운반면허

- 운반자는 돼지 운반을 위하여 면허가 있어야 함 덴마크 수의 식품청 (The Danish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이 이를 담당함
- □ 운반업자와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
 - 돼지가 이동하는 동안 적절히 돼지가 취급되기 위하여 덴마크 교통 기관과 덴마크 육류 연구소가 함께 살아 있는 돼지를 이동하는 동안 기사나 운반자가 지속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음
 - 이 교육은 2일 과정이며, 돼지의 운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교육과정은 1998년 시작되어 Danish Crown과 TiCan 도축장에 운반 하는 모든 운반자와 기사는 이 교육을 마쳤음

□ 운반차

- 돼지 운반차는 덴마크 자동차 검사국(Danish Motor Vehicle Inspectorate)에서 승인 받아야 함 양돈산업계는 돼지 운반 자동차가 준수해야할 지침 을 HST(Handbook on Pig Transport)에 반영하고 채택함
- 적절한 돼지의 관리를 위해 운반차는 상차시설, 미끄럼 방지 바닥과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추가로 다음의 지침이 준수되어야 함

- 각 격실의 돼지의 수는 최대 15-20두여야 함
- 과적은 금지
- 운전은 조심스럽게 하여야하고 필요 없는 정차는 피해야 함
- 운반에 대한 지역 합의서를 가지고 다녀야 함
- 돼지 이동을 위해 몰이판을 사용하여야 함
- 모든 기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함
- 모든 차량은 도축장을 떠나기 전에 세척해야 함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o 타법사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을 허가하면서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가축 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운반·처리·액비살포까지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음

* 가축분뇨 또는 액비 수집운반차량에 중량센서, 위성항법장치(GPS), 차량 영상장치 등을 설치하여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가축분뇨수집 운반업: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 2. ~ 3. (생 략)
 - ② ~ ⑨ (생 략)
-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 은 제37조의3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 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운반・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수집・운반하는 중에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시설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① 비용편익분석: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438.05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저	시행년도	분석대 (년		할인율(%	6)	단위	
2021		2022	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4	규제대안 1 : 시설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영향집단	-	비용	용 편익		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직접	438.05		438.05			438 05	

111 - 11 - 11 - 1 - 1			- 11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직접	438.05		438.05
· 소상공인	간접			
피규제 일반	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연	<u> </u>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438.05		438.05
기업순비용	용	438.05	연간균등순비용	55.36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행 가축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차량의 범위를 기존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화물차에서 승용차, 승합차 및 이륜차로 확대하는 것으로
- 특히, 농장 외부의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 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실제 등록하는 피규제자는 소수에 그칠 것
- 최근 ASF, 고병원성 AI 등 출입차량·사람 및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전염병 유입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농가소득 제고를 고려할 때 규제에 대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고
- 특히, 축산농가(50㎡초과 사육시설, 소유자 및 종사자) 소유 승용차 중 농장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승용·승합·이륜차)의 GPS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보조사업*을 통해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상황으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 *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사업 추진 중[(GPS 단말기 설치(국비 50%, 지방비50%), 통신비 매월 9,900원/1대 (국비25% : 지방비 25% : 자부담 50%)]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등록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하고 있으므로 시설출입차량의 범위가 일부 확대 되더라도 지원·관리·감독 등 행정적 집행에는 문제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국가 보조사업*을 통해 가축 소유자등이 소유 또는 임차한 승용차,

승합차 및 이륜차를 등록할 경우 GPS 장착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하고 있어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피규제자의 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사업 추진 중[(GPS 단말기 설치(국비 50%, 지방비50%), 통신비 매월 9,900원/1대(국비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특히, 농장 외부의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 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 도록 하여 실제 등록하는 피규제자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판단

축산차량 등록 확대(축산농가 승용차)에 대한 농가의견 조사결과

- □ 조사개요
 - 조사일자·대상 : '19.12.12. 축산농가 100호(소 38, 돼지 32, 가금 30)
 - ㅇ 조사방법 : 10개 시도(9개도+세종시)를 통해 10호씩 유선 설문

□ 조사결과

- o 현재 승용차 출입방식은 ①**농장 외부 주차시설에 주차**(59%) 또는 ②**농장 내부로 직접 진입** (37%)하는 경우가 대부분
- 승용차가 등록대상에 포함될 경우 농장 내·외부 별도 주차시설을 이용 의견이 대부분(87%) 이고, **축산차량 등록 의사는 소수**(13%)



ㅇ 현재 농장주 및 종사자 승용차가 농장에 출입하는 방식

호 이러시기	노기소			
출입방식	농가수	소	돼지	가금
① 농장 안으로 직접 진입	37	21	2	14
② 외부 주차시설에 주차	59	17	28	14
③ 별도 출입구를 가진 내부 주차시설에 주차	4	_	2	2
합계	100	38	32	30

ㅇ 승용차 등록 의무화 시 이행 방안

ਨ ਹੀਸ਼ੀ ਹੈ	トゥL 人			
출입방식	농가수	소	돼지	가금
① 축산차량 등록	13	10	_	3
② 농장 외부에 주차시설 설치(등록제외)	75	24	30	21
③ 별도 출입구를 가진 내부 주차시설 설치(등록제외)	12	4	2	6
합계	100	38	32	30

ㅇ 축산차량 등록현황 : 61,768대

('21. 10 기준)

유형	등록대수	유형	등록대수	유형	등록대수
가축운반	22,767	가축분뇨운반	2,426	인공수정	1,005
원유운반	668	왕겨,깔짚등운반	1,402	컨설팅	3,980
알운반	2,763	퇴비운반	1,888	시료채취·방역	2,366
동물의약품운반	1,004	난좌운반	50	기계수리	398
사료운반	12,057	가금부산물운반	81	가금상하차인력운송	117
조사료운반	442	진료·예방접종	1,164	농장운영관리	7,166
고시표군인	442	전표·에 O H O	1,104	가축사체운반	24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2.2월) GPS를 활용한 축산출입차량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완료보고
- ('12. 상반기)『가축전염병 예방법』 하위법령 정비 및 교육 추진
- ('12. 하반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차량출입정보 제공 기능 등을 갖춘 GPS(등록스티커 포함)를 공급 및 시설출입차량 등 록제 시행
- ('13.1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장착 의무화 시행
- ('18.7.1.) 남은음식물(사료), 난좌 및 가금부산물 운반차량, 가금 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 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도 시설출입차량 등록대상으로 추가
- ('19.12.12.) 시설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대한 농가의견 조사
- ('21.5.27.) 고병원성 AI 개선대책 마련
- ('21.6.10.) 고병원성 AI 개선대책 관련 가금단체 실무협의회 개최
- ('21.6.14.) 고병원성 AI 개선대책 관련 가금단체장 협의회 개최
- ('21.6.18.) 고병원성 AI 개선대책 관련 전문가 협의회 개최
- ('21.9.3.~9.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

기관 협의

2. 향후 평가계획

○ 지방자치단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시설출입차량 등록 여 부를 점검 및 시설출입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

3. 종합결론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예측이 어렵고, 발생할 경우 대규모 살처분, 이동제한, 소독 등으로 막대한 방역비용이 소요되어 축산업계 전반에 큰 손실*을 야기함
 -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발생에 따른 생산성 악화로 낙농, 육우, 양돈 산업의 생산액 10% 감소시 생산유발액 감소 2조 3,849억원, 부가가치 감소 5,608억원, 고용유발 감소 29.487명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농촌경제연구원)
- (ASF) 타국의 발생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농가단위 차단방역에 실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아프리카돼지 열병은 장기간 근절되지 못하고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
 - * 스페인·포르투갈 : 완전 근절에 30년 이상 소요,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러시아 등 동유럽 10개 국가 : 2007년 ~현재 지속발생 중
- (고병원성 AI) '16-'17년의 발생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농가단위 차단방역에 실패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 급속히 확산되어 수백만 마리의 가금을 살처분하고
 -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수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
 - * 가금산업 피해로 인해 연관산업의 생산액이 3,83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금산업과 연관산업을 합쳐서 6,711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부가가치 감소액은 1,584억 원, 고용 인력은 7,863명이

감소할 것으로 계측

-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중 축산농가(50㎡초과 사육시설, 소유자 및 종사자)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 중 농장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승용·승합)을 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프리카돼지열 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농가소득 제고 등 전체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시	설출C	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H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직접	438.05		438.05
· 소상공인	간접			
피규제 일반	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연	<u> </u>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438.05		438.05
기업순비용	음	438.05	연간균등순비용	55.36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피규제자 농가) 가축 사육농가의 차량, 사람 및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여 차단방역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함으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음□ (축산물 유통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해 축산물 수요·공급 불안전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최소화된 안정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물 유통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음□ (일반국민) 가축전염병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축산업에 대한 국민인식전환을 통해 친환경축산, 동물복지축산 등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에 의한 안정성 우려 등을 최소화하여 수요·공급 불안정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시설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를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려는 가축의 소유자등		
활동제목	시설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비용항목	외부서비스		
비용	438,054,408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통신비용(원) X 연간 지불 횟수 X 피규제자 수] X 피규제자 부담률(([9,900*12*932]*0.5))		
	1) 피규제자 수 산정		
	○ 피규제대상자 규모는 농장운영관리 차량으로 등록된 7,166대		
	('21.10.31.기준) 중 설문조사 결과 차량등록을 희망한 응답자의 비율		
	13%를 적용하여 932명으로 산출		
근거설명	축산차량 등록 확대(축산농가 승용차)에 대한 농가의견 조사결과 □ 조사개요 ○ 조사일자·대상: '19.12.12. 축산농가 100호(소 38, 돼지 32, 가금 30) ○ 조사방법: 10개 시도(9개도+세종시)를 통해 10호씩 유선 설문 □ 조사결과 ○ 현재 승용차 출입방식은 ①농장 외부 주차시설에 주차(59%) 또는 ②농장 내부로 직접 진입(37%)하는 경우가 대부분 ○ 승용차가 등록대상에 포함될 경우 농장 내·외부 별도 주차시설을 이용 의견이 대부분(87%)이고, 축산차량 등록 의사는 소수(13%) 현재 승용차 출입방식 ○ 농장안으로 직접진입 37 (소1, 돼지 3, 가급 14) (소10, 가급 3) ○ 항상하는 경우가 이행방안 ○ 함당 주차시설에 주차 (소17, 돼지 28, 가급 14) (소17, 돼지 30, 가급 21) ○ 별도출입구를 가진 내부 주차시설에 주차 (용지 2, 가급 2) (소4, 돼지 30, 가급 21)		
	ㅇ 현재 농장주 및 종사자 승용차가 농장에 출입하는 방식		

호 이 바시	トゥl 入			
출입방식	농가수	소	돼지	가금
① 농장 안으로 직접 진입	37	21	2	14
② 외부 주차시설에 주차	59	17	28	14
③ 별도 출입구를 가진 내부 주차시설에 주차	4	-	2	2
합계	100	38	32	30

ㅇ 승용차 등록 의무화 시 이행 방안

ਨ ਹੀ ਸੀ- ਪੀ	농가수			
출입방식		소	돼지	가금
① 축산차량 등록	13	10	-	3
② 농장 외부에 주차시설 설치(등록제외)	75	24	30	21
③ 별도 출입구를 가진 내부 주차시설 설치(등록제외)	12	4	2	6
합계	100	38	32	30

ㅇ 축산차량 등록현황 : 61,768대

('21. 10 7]

준)

유형	등록대수	유형	등록대수	유형	등록대수
가축운반	22,767	가축분뇨운반	2,426	인공수정	1,005
원유운반	668	왕겨,깔짚등운반	1,402	컨설팅	3,980
알운반	2,763	퇴비운반	1,888	시료채취·방역	2,366
동물의약품운반	1,004	난좌운반	50	기계수리	398
사료운반	12,057	가금부산물운반	81	가금상하차인력운송	117
조사료운반	442	진료·예방접종	1 16/	농장운영관리	7,166
<u> 고</u> 기표군인	442	근표·세공급증	1,164	가축사체운반	24

2) 비용산정

- [통신비용(9,900원) X 연간 구매 횟수(12) X 피규제자수(932)]*피규제 자 부담률[0.5]
- 3) 피규제자 부담률은 국가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경우로 산정
 -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21년 기준 2,079 백만원)(보조율 국고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4)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사업 현황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

□ 사업목적

○ 가축질병 발생 시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정보를 수집·분 석함으로써 가축방역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마련하고자 축산차량 출입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 (GPS)를 장착한 차량 소유주에 대한 통신료 일부를 지원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 착한 차량 소유자

○ 사 업 량 : 70,000대

ㅇ 사 업 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8,316,000	2,079,000	2,079,000	4,158,000

- * 지원비율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지원단가 : 월 9,900원/대(국비 2,475, 지방비 2,475, 자부담 4,950)
- ㅇ 사업추진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 (GPS)를 장착·운행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통신비 지원
 - 이동통신사는 매월 시·도 또는 시·군·구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가입내역에 따라 통신비의 50%는 지자체, 50%는 가입자에게 청구
 - ※ 이동통신사 청구 서류 : GPS 가입내역, 청구서

□ 간접편익

(정성)세분류	피규제 기업·소상공인(농가)
활동제목	개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에 따른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편익항목	개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에 따른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 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피해) 정부의 재정지출과 해당 가축의 수급 측면 변화에서 발생한 손실액 - (간접피해) 연관 산업의 판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 (2010년 11월, 구제역) 살처분 보상, 방역비, 수매, 생계안정자금 등정부 재정지출액은 3조 391억 - 매몰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율은 낙농 8.46%, 한육우 3.92%, 양돈 33.57% - (산업연관 분석 결과)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1,467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9,876억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425명 ○ (201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따른 피해액은 약 2,880억원 - 가금의 생산유발효과는 2.33으로 가금 생산액이 1원 감소하면 연관산업 생산액은 2.33원 감소함 -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55, 취업 유발계수는 10억 원당 21.9명, 고용유발계수는 5.4명으로 부가가치 감소액은 1,584억원, 고용 인력은 7,863명이 감소할 것으로 계측 - 가금산업 피해로 인해 연관산업의 생산액이 3,8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금산업과 연관산업을 합쳐서 6,711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근거] ○축산 방역체계 개선방안(정책연구보고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시 방역체계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편익

(정성)세분류	축산물 유통업자
활동제목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편익항목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피해) 정부의 재정지출과 해당 가축의 수급 측면 변화에서 발생한 손실액 - (간접피해) 연관 산업의 판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 (2010년 11월, 구제역) 살처분 보상, 방역비, 수매, 생계안정자금 등정부 재정지출액은 3조 391억 - 매몰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율은 낙농 8.46%, 한육우 3.92%, 양돈 33.57% - (산업연관 분석 결과)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1,467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9,876억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425명 ○ (201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따른 피해액은 약 2,880억원 - 가금의 생산유발효과는 2.33으로 가금 생산액이 1원 감소하면 연관산업 생산액은 2.33원 감소함 -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55, 취업 유발계수는 10억원당 21.9명, 고용유발계수는 5.4명으로 부가가치 감소액은 1,584억원, 고용인력은 7,863명이 감소할 것으로 계측 - 가금산업 피해로 인해 연관산업의 생산액이 3,8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금산업과 연관산업을 합쳐서 6,711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근거] ○축산 방역체계 개선방안(정책연구보고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정책연구보고서,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소비자)
활동제목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편익항목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0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효과로
	구분할 수 '	있음.						

- (직접피해) 정부의 재정지출과 해당 가축의 수급 측면 변화에서 발생한 손실액
- (간접피해) 연관 산업의 판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 ㅇ (2010년 11월, 구제역) 살처분 보상, 방역비, 수매, 생계안정자금 등 정부 재정지출액은 3조 391억
 - 매몰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율은 낙농 8.46%, 한육우 3.92%, 양돈 33.57%
 - (산업연관 분석 결과)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1,467억원, 부가가치유 발 감소액은 9,876억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425명
- ㅇ (201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따른 피해액은 약 2,880 억원
 - 가금의 생산유발효과는 2.33으로 가금 생산액이 1원 감소하면 연관 산업 생산액은 2.33원 감소함
 -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55, 취업 유발계수는 10억 원당 21.9명, 고용 유발계수는 5.4명으로 부가가치 감소액은 1,584억 원, 고용 인력은 7,863명이 감소할 것으로 계측
 - 가금산업 피해로 인해 연관산업의 생산액이 3,83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금산업과 연관산업을 합쳐서 6,711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근거]

ㅇ축산 방역체계 개선방안(정책연구보고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근거설명

< 규제 개요 >

	1.규제사무명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기본	2.규제조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 별표 2의4 및 2	제20조의9		
정보	3.위임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12.21 ~ 2022.01.2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14건(경기·인천), '20 8월에 3건*(고성·인기에서 현재까지 화천총 1,638건이 발생하 조류인플루 발생('20.11~'21.4)하역 서도 6건이 발 유럽어 올 겨울 우리나라성이 높아짐에 따라고병원성 AI 발생여가 있음 이특히, 고병원성 AI, 역명 바이러스의 패견한 방역대책을 추진하 되는 주요 원인은 기가 대다수임 - AI, 구제역도 유입원 보이라이 되는 사람에 의한 것을 * AI 방역체계 개선된 건국대학교) ** 2014-2016 구제역연구원) - 2019년 최초 발생한 연구원) - 1019년 최초 발생한 안차량에 의한 농점에 의한 농점에 의한 농점에 의한 등점에 의한 의한 의한 등점에 의한	.10월 2건(화천), '21. 데·홍천) 발생(총 20년 형천) 등 17개 시원 연천 등 17개 시원 연천 등 17개 시원 연천 등 17개 시원 연구(201) 기본 전 등 12 등	[돈농장에서 '19.9~10월] 5월 1건(영월) 이후 최근건)하였으며, 야생멧돼지 ASF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 철 가금농장에서 109건 도래한 철새(가금농장에서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등으로 국내 유입 가능력량을 집중하여 ASF 및방역대책을 추진할 필요 사라, 차량에 의한 경우 78.9%**가 출입차량 또정책연구보고서, 2015년, 너, 2016년, 한국농촌경제 중간결과에 따르면 14건당사람·매개체, 5건은 축임 있음 7.3월, 한국농촌경제연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T					
		입을 차단하한 바이러스 생조수 등에 생동물 차단명 생동물 차단명 수 기취적인 설 입구에 전 실기 비효율을 이 제도화 필요성 상당히 많은 이 반면 농가 입약이 수반되기	는 시설 미비와 유입, 사료·왕겨 비 의한 오염원 유비 방법에서 가금농 등에 대한 설치 지료 및 방법이 전실 대신 신발 2 본동, 차량 소독시적 운영 문제가 있정) 가축전염병은 하고, 식품·외식 등 사회적 부담을 초장에서는 방역기를 되었다.	농가의 방역지침 ·분뇨수거·계란 입 등으로 추정되 장에 울타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다 에 대한 규정이다 본조를 설치하는 설 설치 및 운영 있는 것으로 조사 한 농장에서 발생 등 연관산업에도 래함 준 준수를 위해 대한	수집 차량 및 야 타며, 는 담장, 전실, 야 고 있으나 미비하고 축사 시 는 등 축산농가의 미숙 등 방역시 되었음 생하면 다른 농장 피해를 주는 등 다양한 행동의 제 리 자발적 참여만		
	7.규제내용	리카돼지열병, 농장 내로 유	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내용)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바이러스기 농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강화하는 것임				
	8 .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		-: 122,304호 농림축산식품부 및 유 형 가축 사육업자	인원수	또는 규모 2,304호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여 가축전염병의 ○(기대효과) 가축	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부기준을 강화하여	단방역 수준을 높 차단방역 수준을 3 것으로 기대됨		
규제의	10 비용편이보셔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비용	편익	순비용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사육시설의 유입의 방역기준을 경하도록 하여 가축	을 차단하기 위히 강화하여 차단방약 한전염병의 발생	바이러스의 가축 시 가축 소유자 등 역을 철저히 수행 및 확산을 방지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음			
			0 (축산물 유통	통업자) 가축?	전염병 예방을 통해 축
			산물	수요·공급	불안전에 대	다른 축산물 가격의 급
			격한	변화가 최	1소화된 안정	J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	며, 가축전역	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
			물유	유통 기술0	발전하게	되고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	가 활성화되	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음
			0 (9	일반국민)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
						고 축산업에 대한 국민
						산, 동물복지축산 등 소······
						.으며, 가축전염병에 의
						화하여 수요·공급 불안
						급격한 변동을 막아 안
		기수여하며:	│전 한 7 Ⅰ			공급받을 수 있음
	11.영향평가	기술영향평	/	443	향평가	중기영 향평가
	여부	해당없음		해딩	} 없음	해당없음
	12.일 몰설 정	ㅇ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	·련된 규제로	일몰설정 대상에 해당
	여부	되지 않음				
	13. 우선허용:					
-1 -1	사후 규제	'	,		·련된 규제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
기타	적용여부	용 대상에 해당되	되지 않	음		
	10311					
	14.비용관리제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단위:백만원)	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의4]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u>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u> (제20조의9 관련)
1. ~ 2. (생 략)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 치 요령 가. ~ 다. (생 략) <신 설>	 ~ 2. (현행과 같음)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가금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
	와 해당 벨트 주변에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 바닥 등을 주기적으로 청 소·소독한다.
4.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 사항	4.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 사항
가. ~ 나. (생 략) <u><신 설></u>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오리부화용 알에 한하여 부화장에서 난좌 세척·소독 시설을 구비·운영하고 세척·소독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영상기록을 촬영일로부터 1개월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라. 알의 운반 또는 취급에 사용되는 합판·파 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파레트 등은 사육시설로 반입하기 전에 세척·소독
<u><신 설></u>	하여야 한다. 마. 가축 사육시 사용하는 기자재, 소모품 등은 농장내 외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1의10의 기준에 따른 물품반입창고(시설) 또는 외부와 차단된 실내공간(오염 방지 목적에 적합한 덮개 포함)에 보관하여야한다.
다.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는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보관하여야 한다.	반. 가금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각 출입구, 각 방역실 출입구, 전실내부(2020년 10월 1일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 한한다), 각 사육시설의 출입구(부출입구를 포함한다) 및 내부에는 출입자의 방역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이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현 행

- 라. 축사 내부・외부는 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청소·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 하며, 필요한 경우 농장 밖 주변부 및 진입로 등도 청소·소독하여야 한다.
- <u>마.</u> 축사 및 사료보관창고 주변에는 사료 등 잔 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u>바</u>. 농장 내 축사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사 동별로 전실(닭, 오리 사육농가에 한정한다) 을 설치하고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신발 등을 비 치해야 하며, 가축소유자 등이 축사에 출입할 때 축사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 간 장화 를 갈아신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 에 출입해야 한다.
- 사. 축사에 깔짚, 톱밥 또는 왕겨 등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후 사용하고, 다른 축사로 이동할 때마다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u>아.</u> 가축의 분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자. 가축소유자는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별표 3의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차.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서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一齊) 입

 식(入殖) 및 출하를 준수해야 하며, 입식제

 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u><신 설></u>

<신 설>

<u>카.</u>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개 정 안

하며,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사. 축사 내부·외부는 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청소·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장 밖 주변부 및 진입로 등도 청소·소독하여야 한다.
- <u>아.</u> 축사 및 사료보관창고 주변에는 사료 등 잔 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자. 농장 내 축사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사 동별로 전실(닭, 오리 사육농가에 한정한다) 을 설치하고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신발 등을 비 치해야 하며, 가축소유자 등이 축사에 출입할 때 축사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 간 장화 를 갈아신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 에 출입해야 한다.
- 차. 축사에 깔짚, 톱밥 또는 왕겨 등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후 사용하고, 다른 축사로 이동할 때마다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u>카.</u> 가축의 분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u>타.</u> 가축소유자는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별표 3의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파.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서 농림축산식품 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제(一齊) 입 식(入殖) 및 출하를 준수해야 하며, 입식제 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하다.
- 타<u>.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장 진입로 등에 생</u> 석회를 충분히 도포하여야 한다.
- <u>하.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u>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 거. 가금 사육업자 중 농장내에 식용란 선별포 장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 장 이외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반입하 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너.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가금 사육업자는 위반한 소독설비와 방역시 설을 보완한 후에 해당 가금을 입식하여야 한다.
- <u>더.</u>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현 행	개 정 안
5.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5.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및 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추진배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양돈농장에서 '19.9~10월 14건 (경기·인천), '20.10월 2건(화천), '21.5월 1건(영월) 이후 최근 8월에 3건 (고성·인제·홍천), 10월에 1건(인제) 발생(총 21건)하였으며, 야생멧돼지에서 현재까지 화천·연천 등 19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에서 총 1,708건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109건 발생 ('20.11~'21.4)하였으며, 최근 국내 가금농장에서도 6건이 발생하였 으며, 유럽·아시아 등 해외에서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올 겨울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철새 등으로 국내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매개체·차량·사람에 의 한 농장 유입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농장에 유입되는 주요 원인은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사람, 차량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의 경우 유입원인의 54.3%*, 78.9%**가 출입차량 또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5년, 건국대학교)
 - ** 2014-2016 구제역 백서(정책연구보고서,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년 최초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도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21건 중 16건은 차량·사람·매개체, 5건은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간 전파로 추정하고 있음

<사례>

- ① 오염된 주변 농경지로부터 농장 관리장비(트렉터)에 의해 농장 주변 및 농장 내 오염원 유입 추정(인근 농경기 야생멧돼지 발자국 확인)
- ② 농장 입구 텃밭, 농장 진입로 주변 및 퇴비사 주변이 오염되어 농장종사자가 퇴비사 등 왕래 과정에서 농장 내 유입 추정
- ③ 농장종사자가 텃밭, 퇴비사 등 왕래 과정에서 농장 내 유입 추정
- 특히,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2017.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6-'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역학조사 결과
 - 국내 가금 사육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원인은 대부분 외부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 미비와 농가의 방역 지침 미준수 등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사료·왕겨·분뇨수거·계란 수집 차량 및 야생 조수 등에 의한 오염원 유입 등으로 추정되며,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가금농장에 울타리 또는 담장, 전실, 야생 동물 차단망 등에 대한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설치 재료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축사 시설입구에 전실 대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는 등 축산농가의 전실개념 혼동,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운영 미숙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 (정부개입 필요성) 가축전염병의 특성상 발생 예측이 어렵고 한 농장에서 발생하면 다른 농장에서도 발생하고, 식품·외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산업에도 피해를 주는 등 상당히 많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함
 - 반면 농가 입장에서는 방역기준 준수를 위해 다양한 행동의 제약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도화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가축 전염병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o 규제대안의 내용

취해이지아	대안명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현행 유지
현행유지안	내용	현행 기준을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내용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강화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대안명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완화
규제대안2	ı ll Q	가축소유자 등의 사유재산인 가축 및 가축 사육시
	내용 	설의 방역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인의 기준에 따름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현행 기준을 유지하여 규제의 강화 또는 추가 없이 적용 가 능	현행 기준의 개념 혼동 등에 따라 방역기준의 미준수 또는 운영 미숙에 의해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유입 가능성이 높음
규제대안1	현행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 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 축소유자 등이 방역기준을 준 수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유입을 차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함	
규제대안2	현행 기준을 완화하여 규제의 가축소유자 등의 판단에 따라 방역기준 적용이 가능	방역기준의 개념 혼동 등에 따라 방역기준의 미준수 하거나 방역기준 운영 미숙에 의해 가 축전염병 병원체의 유입 가능성 이 높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도종닭협회, 한국年용종계부화협회, 대한한돈협회	o AI 개선대책 과제별 추진방안 등 설명 o 관련 법령 개정안 설명	의견 수렴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야생조류(철새)의 이동으로 오염 지역이 광범위하고, 국내에 철새가 도래하는 동절기부터 철새가 떠나가는 내년 봄까지 발생 위험이 지속되어 가금농장으로 확 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 현재,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6건이 산발 적으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유럽 야생조류의 AI 발생은 40배 증가(1~8월 1,237건, 전년 동기 31 건)하고 발생 유형도 다양(1종→6종)해졌으며, 중국 등 아시아도 발생이 3배 증가한 상황
-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검출 지역이 경기 북부→강원 북부→강원 중부로 확산되었고, 최근 울타리 밖인 가평·홍천·평창·정선에서도 검출되는 등 백두대간 등을 통해 양돈농장이 다수 분포한 중부지 역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 6월 이후 멧돼지 양성 검출(164건, 경기·강원 13개 시군) 반경 10km 내 농장은 256호로 해당 시군 양돈농장의 72% 차지하고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
 - 특히, 농장종사자의 외부 영농활동 등으로 인해 가을철 농장에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되는 주요 원인은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사람, 차량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임
 - AI, 구제역도 유입원인의 각각 54.3%*, 78.9%**가 출입차량 또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5년, 건국대학교)
 - ** 2014-2016 구제역 백서(정책연구보고서,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년 최초 발생한 ASF도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21건의 사육돼지 발생 중 16건은 차량·사람·매개체, 5건은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간 전파로 추정하고 있음
 - 특히,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2017.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6-'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역학조사 결과

- 국내 가금 사육농장의 AI 발생 원인은 대부분 외부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 미비와 농가의 방역지침 미준수 등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사료·왕겨·분뇨수거·계란 수집 차량 및 야생동물 등에 의한 오염원 유입 등으로 추정됨
- □ 가축전염병은 한 농장에서 발생하면 다른 농장에서도 발생을 하고, 식품·외식 등 연관산업에도 피해를 주는 등 상당히 많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함
 - 반면 농장 입장에서는 방역기준의 준수 시에 행동의 제약이 수 반되기 때문에 제도화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가축 전염병의 방역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 가축전염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농가 단위 차단방역에 실패하여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야기 하므로
 -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차단방역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한 것은
 -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 전 및 농가소득 제고 등 전체 축산업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단 으로 비례적으로도 타당한 수단으로 판단됨

3. 규제목표

□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을 강화하여 차단방역 수준을 높여 가축 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되는 **주요 원인**은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사람**, 차량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도 유입원인의 각각 54.3%*, 78.9%**가 출입차량 또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5년, 건국대학교)
- ** 2014-2016 구제역 백서(정책연구보고서,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년 최초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1건의 사육돼지 발생 중 16건은 차량·사람·매개체, 5건은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간 전파로 추정하고 있음
- 특히,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2017.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6-'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역학조사 결과
 - 국내 가금 사육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원인은 대부분 외부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 미비와 농가의 방역 지침 미준수 등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사료·왕겨·분뇨수거·계란 수집 차량 및 야생동물 등에 의한 오염원 유입 등으로 추정됨
- □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차단방역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한 것은 가축 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농가소득 제고 등 전체 축산업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단으로 판단됨
 - 특히, 가축전염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농가 단위 차단방역에 실패 하여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므로 비례적으로도 타당한 수단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①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 ② 사업의 요건으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절차를 설정함 ③ 일부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함 (예: 특정지역·특정유형 사업자 우대, 신규진입자 차별 등) ④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퇴출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예: 과도한 자본금·설비·자격요건·제품검사·인증 등) ⑤ 사업자의 상품, 용역, 자본 그리고 노동의 이동을 제한함 (예: 사업지역 제한 등)	. —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 설정 능력을 제한함 (예: 가격상·하한 설정, 요금인가, 외부기관의 개입 등)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촉, 광고, 마케팅 활동을 제한 일부 사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선택할만한 수준 이상의 품질기준을 설정함 다른 사업자에 비해 일부 사업자의 생산비용을 상대적으로 (예: 특정사업자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나, 일반소비자가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① 산업계 혹은 전문직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를 형성함(협회 협회에 규제 권한 부여 등) ②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또는 매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 ③ 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사업자의 활동을 경쟁 관련법 적용이	도록 요구함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안 ①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제한함(예: 온라인 등 판매채널 기 ② 소비자의 공급자 전환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이동성을 검 (예: 과도하게 긴 계약조건, 계좌 해지·통신사 이동시 수수 ③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활용하는 정보의 내용·제공방식을 제 변경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예: 일부 상품	제한 등) 각소시킴 :료 부과 등) 한하거나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1	규제	영역	
2	규제	방식	
3	예비분	분석모델	
		판단 근거	
4	대상	업종	
(5)	예비년	분 석내용	
6	차등호 여부	화 적용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일몰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미국의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사례>

- 상업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생산자는 ^①출입자, ^②차량(운전자)·장비, ^③축사, ^④사료·물, ^⑤쥐·해충, ^⑥배설물·폐사축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 조치*를 해야함
 - * 생물학적 안전 조치 : 가축전염병이 인간, 동물, 장비, 차량 등을 통해 농장이나, 가금류 사육시설 등에 전염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함
- (주요 내용) 생물학적 안전 조치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가축 사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 차량, 동물·가축, 동물(가축포함)의 사체, 분뇨 및 야생 동물을 통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 미국의 방역 및 관리수칙
 - 출입구 폐쇄(간판 설치) : 평시 잠금상태 유지
 - 방역선 진입시 방역출입시설(전실)을 반드시 통과 : 샤워·환복 후 출입
 - 완충지역 설정 및 준수 : 돈사 주변의 외부통제 경계 역할 수행
 - * 완충지역 진입 전 차량과 장비 세척·소독(차량이 완충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충지역을 설정하며 설정방법은 울타리, 간판, 말뚝, 깃발, 로프 등 다양함)
 - ㅇ 울타리 설치
 - 주차장 : 농장 외부에 설치 등
- * 생물학적 안전조치 세부 내용
- ① 가금 사육시설에 대한 외부접근 차단
- ② 가금 사육시설을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으로 구분하고 울타리로 분리
- ③ 사육관리자만 축사내 출입(사육관리자는 조류가 있는 행사 참석 금지)
- ④ 사육시설 방문자는 샤워 후 환복·신발 갈아신기(덧신. 신발소독 포함)
- ⑤ 허가·등록된 사육대상 가금이 아닌 애완용 조류 등을 보유한 경우 가금 사육시설에 접근 및 접촉금지
- ⑥ 야생 조류의 가금 접촉 금지 및 방사 사육 금지
- ⑦ 사육시설의 청결유지
- ⑧ 가금 사육시설 출입자 전용 의복 및 신발을 구비하고 출입시 환복·신발 갈아신기
- ⑨ 가금 사육시설 출입 전 비누와 물로 손 세척
- ① 사료·물을 매일 교체
- ① 가금 사육에 사용되는 도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 ① 가금의 폐사체는 소각·매몰 처리

- ③ 차량·장비 및 사육시설의 설비 등의 철저한 세척 소독
- ⑭ 새로 입식한 가금의 30일간 격리사육
- ⑤ 가금의 성장 단계별. 품종간 혼합사육 금지
- (b) 가금 사육시설의 장비·도구 등을 타 사육시설 및 농장과 공유 금지
- ① 목제 깔판. 난좌 등 구멍이 많은 자재 등의 공유 금지
- ⑱ 사육 중인 가금의 임상관찰 철저 및 임상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일본의 가축소유자등의 방역기준 운영 사례>

- 일본은 BSE 발생('01)을 계기로 가축질병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사양 위생관리기준」을 제정·운용('04)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 및 보완 실시 ('11년부터 축종별로 기준을 분리)
- (주요 내용) 방역 시설·장비 설치(Hardware), 행동지침(Software) 등 가축사육업자가 사육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 규정

① 장비·시설

1) 위생관리구역 설정, 2) 출입구·사육장 부근 소독시설 설치, 3) 위생관리 구역 전용의복 및 신발 비치, 4) 야생동물 침입방지 그물망 등 설치 등

② 행동지침

1) 가축방역 최신정보 파악, 2) 위생관리구역 설정·병원체 유입 방지, 3) 가금 건강상태 관찰 및 이상 확인시 조치, 4) 매몰 등 준비, 5) 기록 확보 등

③ 사양위생관리기준

구분	세부항목		
l 기축방역에 관한 최신정보 파악 등	1 가축방역에 관한 최신 정보 파악 등		
II 위생관리구역의 설정	2 위생관리구역의 설정		
	3 위생관리구역에 불필요한 사람 출입 제한		
	4 위생관리구역 출입차량 소독		
	5 위생관리구역 출입자 소독		
III 이제 교니 그 여 에	6 위생관리지역 전용의복·신발 비치		
│ III 위생관리 구역에 │	7 축산 관계시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이		
병원체 유입 방지	위생관리구역에 출입 할 때의 조치		
	8 다른 축산 관계시설 등에서 사용한 물품		
	등을 위생관리구역 반입시의 조치		
	9 해외사용 의복 등을 위생관리구역 반입시 조치		
	10 급이·급수시설 통한 야생 동물 배설물 혼입 방지		
IV 야생동물으로 인한	11 음용수 소독		
병원체 유입 방지	12 그물망 등 설치, 점검 및 수리		
	13 쥐 및 해충의 구제		
│ │ V 위생관리구역의	14 정기적 청소 또는 소독		
위생 확보	15 빈 사육장 청소 및 소독		
지경 취포	16 과밀 사육 방지		
VI 가금의 건강상태 관찰 및	17 특정 증상 확인 조기 신고/출하/이동 정지		

	18 특정 증상 이외 확인시 출하/이동 정지
이상 확인시 조치	19 날마다 건강 관찰
이경 확인시 조시	20 가금 반입시 건강 관찰 등
	21 가금류의 출하 또는 이동시의 건강 관찰
Ⅶ 매몰 등 준비	22 매몰 등 준비
Ⅷ 기록 확보	23 감염 경로 확인을 위한 기록 확보
IX 대규모 농장 추가 조치	24 수의사 배치
IA 대표도 등장 구가 호시 	25 신고 규칙의 작성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o 타법사례

- 「축산법」제26조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가축의 개량, 가축질 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농리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3의3은 축산업 허가자 및 가축사육 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개정 2020. 12. 30.>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제30조 관련)

- 1. 공통사항
 - 가. 기르는 가축 및 가축 사육시설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
 - 1) 가축 사육시설 내부·외부 및 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 및 소독 하여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
 - 2) 깔짚, 사료 등을 반입하기 전에는 보관 장소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깔짚, 사료 등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외부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청결하게 보관·관리하고 사용할 것
 - 3) 사료 급이 및 음수 관련 시설 및 장비는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하여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
 - 4) 해충과 설치류 등의 구제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 나.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방역 등을 위해 관계없는 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육시설에 출입시키지 않을 것 다. 사육시설 내에서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고, 사

육시설 내로 종업원 등 관계자를 출입시키는 경우에도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도록 할 것

- 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최종 기재일부터 1년 동안 이를 보관할 것
- 마. 기르는 가축에 대한 위생 ·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 1)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약 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 하 "의약품등"이라 한다)만 사용할 것
 - 2)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 3)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에 기재된 제품표시사항(대상,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할 것
 - 4) 동물용 의약품등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한 날짜, 제품명, 사용량, 구매처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할 것
- 바. 기르는 가축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에 따라 폐사 현황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2년 동안 보관할 것
- 사.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아. 영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육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 서만 가축을 사육할 것

2. 종축업

가. 종돈업

- 1)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관리할 것
- 2) 종돈을 판매할 때에는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할 때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할 것
- 나. 종계업·종오리업: 종란을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종란 혈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3. 부화업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만 부화시킬 것
 - 1) 종계 · 종오리 및 메추리의 알
 -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중 종오리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종 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 산된 알
 - 3)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중 양계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 나. 병아리·새끼오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병아리·새끼오리 계통보증서를 발급할 것
- 다. 부화기에 들어간 이후 부화가 되지 않은 알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할 것

4. 정액등처리업

- 가. 처리한 정액, 난자 및 수정란을 판매할 때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 · 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할 것
 - 1) 돼지 정액을 판매할 때에는 아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것
 - 가) 정액 제조일자
 - 나) 정액유통(사용가능)기간(보관온도 표시)
 - 다) 정액의 용량
 - 라) 최소 처리 단위당 유효 정자수
- 나. 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지 않을 것
- 다.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2회이상 관할 가축위생 담당 기관이나 축산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고, 그 검진 결과가 나온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기록·보관할 것
 - 1) 결핵 등 전염성질환과 의사증
 - 2) 구개열 등 유전성질환
 - 3) 브루셀라 등 번식기능에 지장을 주는 질환
- 라. 다목에 따른 검진 결과 감염이 확인된 종축과 이들로부터 생산된 정액· 난자 및 수정란은 다음 1) 및 2)에 따라 처리할 것
 - 1) 다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격리치료를 해야 하며, 완치가 확인될 때까지 정액·난자 및 수정란의 생산을 중단할 것
 - 2) 다목2)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종축은 즉시 도태시켜야 하며, 이들로 부터 생산되어 공급·비축된 정액·난자 및 수정란은 즉시 회수하여 폐기

할 것

- 마. 종축의 개체별로 처리한 정액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하고 있는 정액을 6개월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으로부터 다음 1)부터 5)까지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받고 3년 동안 이를 기록·보관할 것. 다만, 돼지정액은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1) 정자의 활력도, 생존율, 기형률
 - 2) 최소 처리 단위당 총정자수 및 유효정자수
 - 3) 정액의 pH(산도)(돼지 정액만 해당한다)
 - 4) 혈액 · 오줌 등 이물질 혼입 여부
 - 5) 정액의 세균 오염 여부
- 바. 영 별표 1 제2호가목3)의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1)에 따른 기록관리대장에 종축관리, 정액 등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할 것.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5. 가축사육업

- 가. 별지 제71호서식의 입식·출하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할 것.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에 따라 폐사 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나. 영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 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
- 다. 교배한 날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은 개별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틀(스톨)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방된 스톨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본다(2020년 1월 1일 이후 돼지 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수의사의 별도 지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절식을 제외하고 사료나 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을 것
-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른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강화				
영향집단	-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직접			
· 소상공인	간접			
피규제 일반	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연	<u> </u>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u> </u>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최근 농가 단위의 방역기준 미준수로 출입차량·사람 및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전염병 병원균의 농장내 유입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해 가축전염병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강화를 통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가소득이 높아질 수 있음을 고려 할 때 규제에 대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방자치단체는 현재도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관리하고 있으므로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관리·감독 등 행정적 집행에는 문제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가축소유자 증의 방역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 지원 소 요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1.5.27.) 고병원성 AI 개선대책 마련
- ('21.6.10.) 고병원성 AI 개선대책 관련 가금단체 실무협의회 개최
- ('21.6.14.) 고병원성 AI 개선대책 관련 가금단체장 협의회 개최
- ('21.6.18.) 고병원성 AI 개선대책 관련 전문가 협의회 개최
- ('21.9.3.~9.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 기관 협의

2. 향후 평가계획

-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서 규정한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 및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농장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할 계획
- 사전점검을 통해 방역기준 미준수 농장의 집중관리 및 가금농장 전담관^{*}을 통해 농장에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등 방역상황을 전달 하고 농장 방역수칙 안내를 병행할 계획

3. 종합결론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 예측이 어렵고, 발생할 경우 대규모 살처분, 이동제한, 소독 등으로 막대한 방역비용이 소요되어 축산업계 전반에 큰 손실*을 야기함

-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발생에 따른 생산성 악화로 낙농, 육우, 양돈 산업의 생산액 10% 감소시 생산유발액 감소 2조 3,849억원, 부가가 치 감소 5,608억원, 고용유발 감소 29,487명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농촌경제연구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타국의 발생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농가 단 위 차단방역에 실패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장기간 근절되지 못 하고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
 - * 스페인·포르투갈 : 완전 근절에 30년 이상 소요,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러시아 등 동유럽 10개 국가 : 2007년 ~현재 지속발생 중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6-'17년의 발생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농가단위 차단방역에 실패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하는 경우 급속히 확산되어 수백만 마리의 가금을 살처분하고
-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수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
 - * 가금산업 피해로 인해 연관산업의 생산액이 3,83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금산업과 연관산업을 합쳐서 6,711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부가가치 감소액은 1,584억 원, 고용 인력은 7,863명이 감소할 것으로 계측
- 이에 따라「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중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것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농가소득 제고 등 전체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직접			
· 소상공인	간접			
피규제 일반	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연	<u> </u>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2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ㅇ (피규제자 농가)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가축 사육시설의 유입을 차단하기위해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을 강화하여 차단방역을 철저히 수행하도록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음ㅇ (축산물 유통업자)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해 축산물 수요·공급 불안전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최소화된 안정적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물 유통 기술이발전하게 되고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음ㅇ(일반국민)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축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을 통해 친환경축산, 동물복지축산 등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에 의한 안정성 우려 등을 최소화하여 수요·공급 불안정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강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피규제 기업·소상공인(가축의 소유자등)
활동제목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비용항목	원재료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소독약 단가(원) X 연간 구입단위 X 연간 구매 횟수 X 피규제 자 수(19096*30*12*0)
근거설명	1) 소독약 단가(19,096원) : 나라장터의 소독약제(1kg기준) 평균 판매가 기준 2) 연간 구입단위: 30포/월(희석배수 200배 감안시 1일 1포 소요) 3) 연간 구매 횟수 : 12회(월1회) 4) 피규제자 수 : 0명*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의9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시설, 가축, 농장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할 의무가 있고 출입자의 농장 전용 의복・신발 등을 구비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어 추가로 규제 대상자가 증가하거나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사례가 없어 실제 비용은발생하지 않음

□ 간접편익

(정성)세분류	피규제 기업·소상공인(농가)
활동제목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편익항목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피해) 정부의 재정지출과 해당 가축의 수급 측면 변화에서 발생한 손실액 - (간접피해) 연관 산업의 판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 (2010년 11월, 구제역) 살처분 보상, 방역비, 수매, 생계안정자금 등정부 재정지출액은 3조 391억 - 매몰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율은 낙농 8.46%, 한육우 3.92%, 양돈

33.57% - (산업연관 분석 결과)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1.467억원. 부가가치유 발 감소액은 9,876억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425명 ㅇ (201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따른 피해액은 약 2,880 억원 - 가금의 생산유발효과는 2.33으로 가금 생산액이 1원 감소하면 연관 산업 생산액은 2.33원 감소함 -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55, 취업 유발계수는 10억 원당 21.9명, 고용 유발계수는 5.4명으로 부가가치 감소액은 1.584억 원, 고용 인력은 7.863명이 감소할 것으로 계측 - 가금산업 피해로 인해 연관산업의 생산액이 3,831억 원 감소할 것 으로 추정되며, 가금산업과 연관산업을 합쳐서 6.711억 원의 생산액 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근거] ㅇ축산 방역체계 개선방안(정책연구보고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7년,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편익

(정성)세분류	축산물 유통업자
활동제목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편익항목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피해) 정부의 재정지출과 해당 가축의 수급 측면 변화에서 발생한 손실액 - (간접피해) 연관 산업의 판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 (2010년 11월, 구제역) 살처분 보상, 방역비, 수매, 생계안정자금 등정부 재정지출액은 3조 391억 - 매몰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율은 낙농 8.46%, 한육우 3.92%, 양돈 33.57% - (산업연관 분석 결과)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1,467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9,876억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425명 ○ (201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따른 피해액은 약 2,880억원 - 가금의 생산유발효과는 2.33으로 가금 생산액이 1원 감소하면 연관산업 생산액은 2.33원 감소함 -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55, 취업 유발계수는 10억 원당 21.9명, 고용유발계수는 5.4명으로 부가가치 감소액은 1,584억원, 고용 인력은 7,863명이 감소할 것으로 계측 - 가금산업 피해로 인해 연관산업의 생산액이 3,8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금산업과 연관산업을 합쳐서 6,711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근거] ㅇ축산 방역체계 개선방안(정책연구보고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ㅇAl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편익항목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피해) 정부의 재정지출과 해당 가축의 수급 측면 변화에서 발생한 손실액 - (간접피해) 연관 산업의 판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 (2010년 11월, 구제역) 살처분 보상, 방역비, 수매, 생계안정자금 등정부 재정지출액은 3조 391억 - 매몰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율은 낙농 8.46%, 한육우 3.92%, 양돈 33.57% - (산업연관 분석 결과)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1,467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9,876억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425명 ○ (201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따른 피해액은 약 2,880억원 - 가금의 생산유발효과는 2.33으로 가금 생산액이 1원 감소하면 연관산업 생산액은 2.33원 감소함 -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55, 취업 유발계수는 10억원당 21.9명, 고용유발계수는 5.4명으로 부가가치 감소액은 1,584억원, 고용인력은 7,863명이 감소할 것으로 계측 - 가금산업 피해로 인해 연관산업의 생산액이 3,8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금산업과 연관산업을 합쳐서 6,711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근거] ○축산 방역체계 개선방안(정책연구보고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 방역체계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